M 45-69 | 2006. 5 |

제 69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6. 5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국제기구 논의동향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통계자료

농업·농정 동향

일본,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실시
일본, 바이오매스 종합전략목표 수립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전략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사례
중국, 농민공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중국, 2006년도 1분기 농림수산물 생산자가격
영국, 농촌주택 저가공급 프로그램
칠레, 육용우생산 개황

일본,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실시

신 용 광*

일본에서는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2006년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농약의 비산과 혼입에 따른 농가 간의 분쟁가능성과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모든 농약을 리스트화하여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5월에 후생노동성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食品衛生法을 개정하고 3년 이내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시행이 2006년 5월 29일이다.

농약에 관한 현행 법률에는 農藥取締法과 食品衛生法이 현존하고 있다. 農藥取締法은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제도로 농약의 유통과 생산단계에서의 사용을 규제·관리하고 있으며, 食品衛生法은 후생노동성 소관으로 식품의 유통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kshin22@krei.re.kr 02-3299-4333

규제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현행의 법률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2가지의 기준(잠정기준과 일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식품안전성 기준

현행 제도하에서 농약의 잔류기준은 독성시험자료 등을 기준으로 ADI (Acceptable Daily Intake)[1]라 불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에도 식품유통에는 규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가축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잔류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잔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유통만을 규제하였다.

이에 반하여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모든 농약에 대하여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은 잔류기준이 설정된 물질, 제도 대상외의 물질, 그리고 잔류기준이 미설정된 물질로 분류하여 다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잔류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잔류하지 말아야하며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제도대상외의 물질은 정부가 사람의 건강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물질로서 살균,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65가지 종류의 물질이다. 마지막으로 잔류기준이 미설

1) ADI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매일 섭취할 경우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섭취량 기준

정된 물질은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잠정기준'과 '일률기준'을 설정하였다. 잠정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가운데 일본에서는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기준을 참고로 잠정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다. 그러나 잠정기준을 설정할지라도 모든 농약이나 농산물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일률기준의 잔류기준치는 0.01ppm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 현행제도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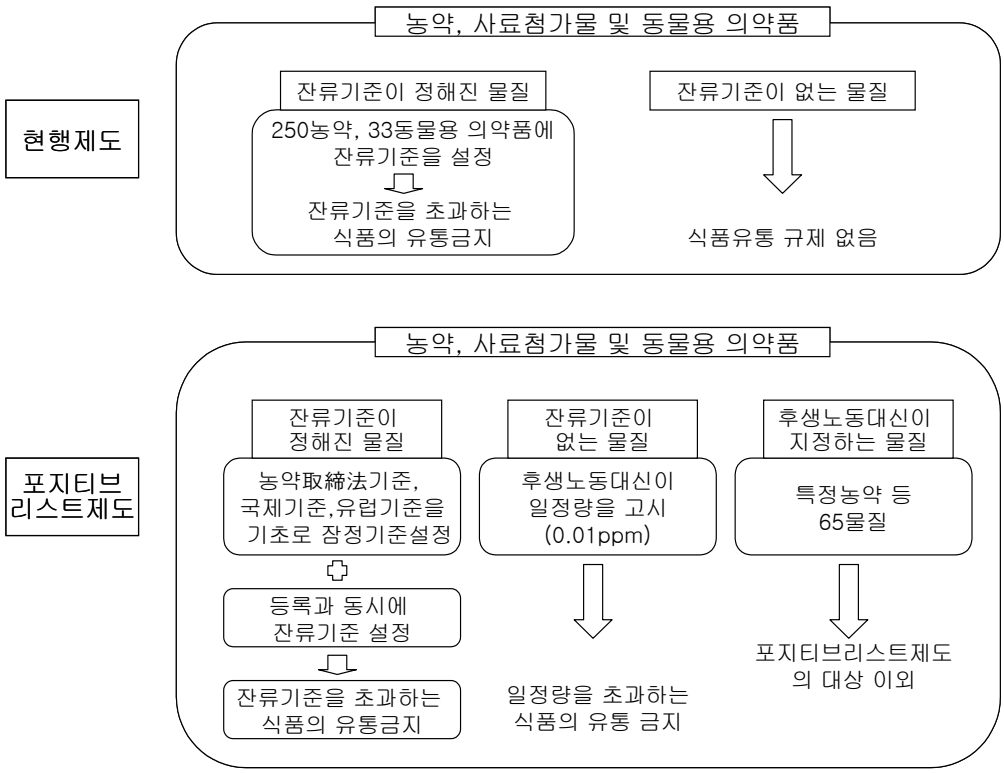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3.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대상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현존하는 모든 식품이 대상이며 농산물 생산에 사

용된 농약의 잔류기준 초과가 금지된다. 농산물과 더불어 육류, 계란, 우유와 같은 축산물도 포함된다. 축산에서는 품질유지나 영양분 투입을 위하여 사용한 사료첨가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에 포함된 물질은 농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된다.

사료에는 곡류나 건목초가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적정한 농약이 잔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섭취한 가축에 잔류하게 되며 제품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첨가물에 대해서도 항생물질 등이 축산물에 남아 잔류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위반하게 된다. 동물의약품에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잠정기준이나 일률기준이 설정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대응책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도 농약의 사용규제가 엄격해 지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고 특히 일률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잔류농약 기준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가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농약을 기준치 이내로 사용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농약의 비산이나 혼입문제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약이 인근으로 비산되어도 인근농가의 농산물에 농약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모든 식품에 기준치가 설정된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로부터 검출되거나 반대로 자신이 사용한 농약이 타인의 농산물로부터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농가 간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단일포장에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인근포장과 근접한 경우에는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남아 있는 잔유물을 깨끗하게 세척함으로써 다른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농가의 생산현장에서 농약의 적정관리, 적정사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물질이나 새로이 개발된 물질을 원료로 한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 등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로부터 새로 개발된 농약을 사용한 작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스스로 독성이나 안전성 자료 등을 모두 준비하여 후생노동성이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 : **http://www.mhlw.go.jp/houdou/2005/11/h1129-2.html**
http://www.nouyaku-bunseki.net/positivelist.html

일본, 바이오매스 종합전략목표 수립

박 기 환*

일본은 2002년 12월에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이하 '본전략')이 각의 결정되었으며, 이에 기초해 계획적인 시책추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실효성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실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는 등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오매스 이·활용 현황과 과제 검증을 통해 새롭게 종합전략을 책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과제나 시책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06년 3월 31일 새롭게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는 종합전략의 목표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1. 2030년 '바이오매스 일본'의 모습

에너지나 제품으로써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 '바이오매스 일본'을 실현하는데 있어 우선, 국민에게 '바이오매스 일본'의 모습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hwan@krei.re.kr 02-3299-4331

성과나 선진적인 추진이 전국에 보급되고, 더욱이 향후 기술개발 전개를 전망한 모습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들 신변에 있는 바이오매스는 자원으로써 이・활용되는 것이라는 의식 및 생활습관이 정착되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발생제어가 진행된다. 바이오매스의 생산・변환에 있어서는 적정한 질소 순환 등의 환경 배려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너지를 만들어 내거나 단계적으로 제품이나 에너지로 변환되는 추진이 진행되어 생활 속에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이 보급된다.

가정이나 외식산업, 소매점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생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분리해 수집되어 퇴비 등에 이용되거나 탄화 혹은 메탄가스화 되어 에너지로써 이용된다. 식품가공 잔존물 등과 같이 성질과 상태가 균일한 자원을 모아 배출되는 것은 사료로의 이용도 추진되어 사료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한다.

하수오니(下水汚泥)나 가축 배설물로 만들어진 퇴비 등의 제품 품질 향상이 도모되어 수요측의 사용을 편리하도록 한다. 에너지로써의 이용도 진전되며, 산출되는 열이나 전기는 시설 내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에도 공급된다.

건설발생 목재는 제지원료 등의 제품이용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외에 제품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발전용 연료로써 이용, 연료용 에탄올 등의 열 이용이 진전된다.

벼짚은 효율적인 회수로 사료로써의 이용이 추진되어 조사료 자급률이 100%로 되는데 공헌한다. 또한 농작물이 식용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에너지 원료로써 비식용에 이용된다. 농업기계에도 바이오매스 유래 연료가 이용되는 이외에 양질 퇴비의 안정적 공급이 도모되고, 경축(耕畜)연휴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보전형 농업이 진전되는 등 농업생산 현장의 모습이 변모한다.

간벌재를 포함한 임지잔재(林地殘材)는 그 이·활용이 건전하고 활력 있는 삼림 육성에 연결되어 지구온난화 방지나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등 산림이 지닌 다면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국민의 이해가 심화된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가공의 대폭적인 비용 절감으로 제품이나 에너지로써의 이·활용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이 제품 혹은 에너지로써 최대한 유효·체계적으로 이·활용되고, 바이오매스 타운이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미션(zero-emission) 사회가 실현된다.

수송용 기계의 동력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액체연료로써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연료 등의 이·활용이 진행된다. 각 지역에 있어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및 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자가 수요나 인근 전력 수요의 일부를 조달하는 등 에너지 지산지소가 실현된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환경으로의 영향이 적은 시스템이 확립되어 많은 제품에 이용된다.

2.'바이오매스 일본'의 진전 시나리오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해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일본'의 진전 코스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바이오매스 일본'의 진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이·활용 대상인 바이오매스의 전개방향 및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의 발전방향은 이하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2.1. 바이오매스 종류에 대응한 이·활용 전개방향

바이오매스는 생물로 인해 생산되므로 '넓고 얇게'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확에 관계되는 비용 및 수확량에 의한 변환효율이 이·활용

의 용이함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2.1.1.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우선 폐기되는 종이, 가축 배설물, 식품 폐기물, 건설발생 목재, 흑액, 하수오니라 일컫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는 그 이·활용에 관련되는 비용면 등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역유상 즉, 폐기물처리비를 부가해 수집되는 것도 있어 당해 비용을 이·활용을 위한 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활용이 비교적 빨리 진전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중 꽤 많은 양이 1개소로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써 식품 폐기물, 건설발생 목재, 하수오니 등이 있다. 식품 폐기물이나 건설발생 목재는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리사이클법 규제와 더불어 전체 에너지나 제품으로써 이·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제도의 침투, 수집·수송, 변환 효율화 등으로 인해 그 이·활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오니는 이제까지 이·활용 중심이었던 제품으로써의 원료 이용뿐만 아니라 타 바이오매스와의 혼합처리나 에너지 이용의 진전으로 한층 효율적인 이·활용이 기대된다. 가축배설물은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시행으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상당량이 퇴비로써 이용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들 지역간 퇴비의 유통이나 에너지 이용도 포함된 지역 수요에 대응한 이·활용 진전이 기대된다.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연간 부존량은 습윤(濕潤)중량으로 약 3억 2,700만톤, 건조중량으로 약 7,600만톤이 예상된다. 이것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1,270PJ(원유환산으로 약 3,280만㎘)에 상당한다. 또한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3,050만톤에 해당되며, 이것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전 탄소량의 약 3배에 상당한다.

2.1.2. 미이용 바이오매스

2010년을 전망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수집비용 면으로부터 농지로 방치되는 미이용 농작물 비식용부, 임지잔재라 일컫는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생산・배출자 측의 노력을 포함한 효율적인 수집 시스템 확립, 일관된 임업비용 전반의 축감을 도모하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생산・유통・가공 비용 절감, 제품・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목표로 한 추진 강화나 전력수요 창출, 더욱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으로 그 이・활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연간 부존량은 습윤중량으로 약 1,700만톤, 건조중량으로 약 1,500만톤이 예상된다. 이것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60PJ(원유환산으로 약 660만㎘),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640만톤에 상당한다.

2.1.3. 자원작물

현 시점에서는 사탕수수 등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조제하고, 가솔린과의 혼합연료로써 이・활용하는 등의 실험・실증 레벨의 추진이나 지역에서 전시적 추진 등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20년경에는 에너지나 제품으로의 변환효율이 대폭 향상되고, 바이오매스에 대해 원료대를 지불해도 화석자원으로 유래하는 에너지 가격이나 제품가격에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에너지원이나 제품원료를 목적으로 미이용지에 이른바 '자원작물'이 재배될 것으로 추측된다.

자원작물의 연간 부존량을 시산해 보면, 습윤중량으로 약 2,200만톤, 건조중량으로 약 1,300만톤이 예상된다. 이것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40PJ(원유환산으로 약 620만㎘),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톤에 상당한다.

2.1.4. 신작물

2050년경에는 해양식물이나 유전자조작 식물이라 일컫는 신작물로 효율적인 바이오매스 생산의 가능성을 포함해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원작물의 연간 부존량을 단순히 합산하면, 전체를 에너지로 환산할 경우 약 1,800PJ(원유환산으로 약 4,600만kℓ),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4,300만톤(국내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픽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의 약 4.3배)에 상당한다.

2.2.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의 전개방향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또는 제품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즉시 실용화되고 있는 것부터 실증 혹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것까지 완성도가 다른 다양한 기술이 있으며, 주변기술도 포함해 연구・기술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2.2.1. 효율성 높은 수집・변환기술 개발・실용화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추진에 있어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집・변환효율이 높은 기술, 바이오매스 자원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물류 시스템을 개발・실용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는 예부터 양조업 등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바이오 테크널로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열・압력이나 화학 등으로 인한 이화학적인 바이오매스 변환기술의 진전뿐만 아니라 바이오 테크널로지를 활용하여 생물화학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해 효율이 높은 바이오매스의 변환기술이 전개되는 등 획기적인 기술의 실용화가 기대된다.

2.2.2. 바이오매스・리파이널 구축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로의 대응, 바이오매스 유래의 에너지나 제품의 폭넓은 용도로의 이・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에서 얻어진 연료나 물질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에 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로써도 제품으로써도 이・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특성을 활용하고,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다종다양한 연료나 유용물질을 체

계적으로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리파이널' 구축이 유효한 수단이다. 화석자원에 의한 '오일·리파이널'에서 발전을 이룬 일본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2.2.3. 바이오매스의 캐스케이드(cascade)적 이용

바이오매스를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원칙으로써 바이오매스를 바로 연소시켜 CO_2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써 가치가 높은 순으로 가능한 한 길고 반복 이용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소시킨 에너지를 이용하는 캐스케이드적(다단계적) 이용이 개개 기술개발의 추진에 덧붙여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따로따로 행해져 왔던 개개 기술개발을 시스템으로써 체계화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이 때 질소, 인 등 영양염류에 대해서도 환경을 배려하면서도 순환적인 이·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2.2.4. 타 분야와의 연휴·주변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변환기술의 실용화에 있어는 장래적인 기술개발과 연결되는 기초연구의 추진과 함께 생명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공학을 시초로 하는 공학계 분야, 이·활용 촉진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성 평가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와의 연휴, 바이오 테크널로지, 나노 테크널로지 등 첨단기술의 연구세력과의 연휴, 산학관 협력이 중요하다. 이들 다방면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술개발·실용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집·변환기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메탄 발효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기술 등 주변기술의 개발·실용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에너지로써의 이·활용은 '넓고 얇게' 존재하는 바이오매스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오매스의 생산·수입에서 변환, 이용에 이르는 각 요소기술이 일체화 되어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이 한층 추진된다.

2.3. 바이오매스의 폭넓은 이·활용 전개방향

2.3.1.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

바이오매스는 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넓고 얇게' 존재하는 특성을 지닌다.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나 제품으로써 이용하는 지역분산형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지속적으로 이·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생산, 수집, 변환, 이용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체로써 경제성 있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바이오매스의 부존상황, 이용에 대한 수요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지역 관계자와의 연휴 하에서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이·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추진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은 물질순환, 경제성,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관점에서 타 지역의 모델이 되는 사례 제시, 지역의 잠재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는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3.2. 지역간 연휴·광역적 추진

일본의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은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이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량이나 시설규모와 바이오매스 제품 등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에 기초해 과부족 조정 등의 지역간 연휴·광역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매스 유래의 수송용 연료 도입촉진은 제도·시설 정비 등 경제성 향상이나 안정공급 확보 등의 환경정비에 따라 국산과 수입의 적절한 안

배를 도모해가면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3.3. 아시아 제국 등 해외와의 연휴

아시아 제국 등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시키는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토 메카니즘(JI, CDM 및 배출량 거래)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효율 좋은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나 소규모인 변환 시스템 등 특히 자연조건이 유사한 아시아 제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진적 기술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제국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 추진에 전략적으로 관여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아시아 제국과의 인재・기술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기술이 아시아 제국 등 해외로 전개되는 것과 함께 이들 아시아 제국의 농산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바이오매스 일본'의 실현을 향한 구체적 목표

'바이오매스 일본'의 가능한 한 조기 실현을 향해 관계자 추진을 촉진함과 함께 '바이오매스 일본'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표는 에너지 가격이 장기에 걸쳐 예측이 곤란한 한편, 산업계가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에 투자할 경우의 참고가 되므로 당면 교토의정서 제1 약속기간 중간인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것과 함께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진보상황이나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하도록 한다.

3.1. 기술적 관점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성 향상은 바이오매스의 한층 이・활용 촉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진전시키는 관계자 등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를 제시해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은 완성도가 다른 다양한 기술이 있어 각각의 기술적 과제를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은 특히 변환효율 향상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기술이 높은 변환효율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변환된 제품의 다양화나 부가가치화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연소 및 가스화 플랜트 등 함수율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에 있어

○ 바이오매스 일일 처리량 10톤 정도의 플랜트(합병 후 시정촌 규모를 상정)는 에너지 변화효율이 전략으로써 20% 혹은 열로써 80% 정도

○ 바이오매스 광역수집에 관한 환경이 정비된 경우 바이오매스 일일 처리량 100톤 정도의 플랜트(도도부현을 상정)는 에너지 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30% 정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2) 메탄 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은 바이오매스의 일일 처리량 5톤 정도의 플랜트(집락에서 시정촌 규모를 상정)에 있어서 에너지 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10% 혹은 열로써 40% 정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3) 바이오매스를 제품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있어 현 시점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유래의 플러스 체크 원료가격을 200엔/kg 정도로 하는 것과 함께 lignin이나 cellulose 등의 유효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실용화 단계의 제품을 10종 이상 만들어 낸다.

3.2. 지역적 관점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은 지역이 자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특성이나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개발이 기대된다.

이 점을 감안해 지역적 관점에서의 목표로써 본 전략 책정 시 바이오매스 타운을 500정도 구축하는 것으로 했지만, 2010년에는 시정촌 합병이 진행될 것을 고려해 60% 정도로 한다.

3.3. 전국적 관점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활용은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추진하는 관계자에 대해 전국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제시함과 함께 '바이오매스 일본'의 진전 시나리오, 기술 진전, 지역 추진 활성화 등에 따라 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예측을 감안해 신 에너지의 하나로써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고, 쿄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 포함된 각종 목표와의 정합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의 이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국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전개는 식품 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리사이클 의무화 등이 조치되어 있지만, 향후 제도의 침투를 도모함과 함께 수집·수송·변환의 효율화 진전 등으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계속적인 이·활용이 예상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대해 수집 시스템 정비, 바이오매스 리파이널 확립 등으로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형태로 이·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화석자

원 유래의 에너지 가격이나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 정도 등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민간기업 활동으로 에너지원이나 제품 원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써 자원작물이 이·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가 탄소량 환산으로 80% 이상 이·활용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탄소량 환산으로 25% 이상 활용된다. 자원작물은 탄소량 환산으로 10만톤 정도가 이·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까지 바이오매스 열 이용을 원유환산으로 308만㎘(수송용 연료에 있어 바이오매스 유래 연료 50만㎘를 포함)로 전망된다.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バイオマス・ニッポン総合戦略』, 2006.3.31.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전략

정 은 미*

농수산물 수출 확대는 농림수산업이나 식품산업 등 관계 업계의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준다. 또한 지역 경제 부활과 식문화를 통한 문화 전달은 미래 수출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5년 4월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전국협의회'를 설립하고,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및 '수출촉진 시책'을 마련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농림수산물 수출 배가사업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수출확대 목표에 따라 중점 추진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28%, 공급열량 기준 식료자급률이 40%에 불과한 일본이 수출을 통해 자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는 개방화 시대의 우리 농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농림수산 수출 현황과 수출 촉진 기본 전략을 살펴보고, '농림수산물 수출 증대 추진사업 실시요령'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업의 종류와 내용 등을 소개한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1.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세계적으로 일식(日食) 붐이 일고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에 따라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고품질이며 안전성에 대해 신뢰가 높은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출 움직임이 확대되고 수출액도 증가 추세이다.

2004년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총액 2,954억 엔으로 총수입액 69,125억엔의 23.4배에 달하지만 2000년에 비해 농산물이 88%, 임산물이 11%, 수산물이 33% 증가했다<표 1>.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이며 아시아 국가에 수출은 1989년 59%에서 2004년은 76%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했다(표 2).

2004년 농림수산물 수출액 2,954억 엔 중 수산물이 40.5%으로 가장 많고 즉석면이나 과자류 등 각종 조제 식료품이 28.4%, 종자를 비롯한 기타 품목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표 3).

대표적인 수출 농림수산물은 일본 술 89억 엔, 수산물인 가리비 62억 엔, 사과 29억 엔, 녹차 17억 엔으로 200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4).

표 1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최근 추이

단위 : 억 엔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
농산물	1,363	1,466	1,646	1,588	1,658	88%
임산물	79	70	80	90	88	11%
수산물	909	978	1,033	1,111	1,207	33%
계	2,351	2,514	2,759	2,789	2,954	

주: 1) 농산물에는 담배, 주류, 수산물에는 진주를 뺀 금액임.
2) 2004년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69,125억엔임.

표 2 주요 수출국(상위 10개국)

단위 : %

	1989년	2004년
미국	25	21
홍콩	20	20
중국	2	17
대만	25	13
한국	5	16
태국	4	5
싱가포르	4	3
인도네시아	-	2
(아시아 계)	(59)	(76)
기타	15	3

표 3 농림수산물 수출 내역, 2004년

종류	비중
각종 조제 식료품 (즉석면, 초코렛 과자, 쌀 과자)	28.4
종자	3.7
곡분・전분	3.1
가죽	2.6
조제 사료	2.5
과실류	1.6
장류・된장	1.5
채소류	0.8
생사・견직물・양모・면	0.7
사탕류	0.6
식물・절화 등	0.6
녹차	0.6
육류	0.5
낙농품・계란	0.3
쌀	0.5
기타	8.5
목재	3.0
수산물	40.5

표 4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농림수산물, 2004년

단위: 억 엔, %

품목	수출액	2000년 대비 증가율
사과	29	482
배	7	77
감귤	5	105
녹차	17	146
참마	13	205
술 (日本酒)	89	1,299
가리비	62	84

2.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

2.1. 판로 개척과 확대의 지원

2.1.1. 정보 수집 및 공유

○ 관계자가 다양하게 입수한 각국 수출입 현황 분석과 수출에 관련된 과제, 선진적인 사례를 파악한다.

○ 각국 유통・소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계자들이 공유한다.

2.1.2. 마케팅 판촉활동에 의한 판로 개척과 확대

○ 해외 시장의 시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장기적・계획적인 수출이 되도록 한다(수출에 필요한 실무나 판로개척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 현지 고급백화점에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활동과 요리 강습회 등 판촉활동을 진행한다.

○ 판로개척을 위해 관계자의 교류, 연구 토의, 세미나 개최, 해외 전시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수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리스크 경감을 위해 보험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2.1.3. 일본 브랜드 해외 홍보

○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을 브랜드로 각국에 알리는 식품전이나 해외 상설 점포를 활용하여 일본 식품이나 식문화 홍보 활동을 한다.
- 일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로고와 PR 문구 작성

2.1.4. 일본에 오는 해외여행자에게 일본 식품 맛보이기

○ 201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목표와 관련하여 관광객이 일본 식품을 맛보고 앞으로 日食과 일본 식품 보급의 잠재적 지지자가 되도록 한다.

2.1.5. 제조업・물류산업과의 연계

○ 농림수산물 수출을 타산업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한다.

2.2. 수출 저해 요인 시정

○ 수출 목표가 되는 각국의 수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별 수출 저해요인을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에 대해 상대국의 시장 접근을 개선한다(FTA에서 고관세율 등 저해 요인 철폐를 요구함).
○ 수출 상대국 요구에 따른 검역 조건 정비를 갖춘다.

2.3. 지적재산권・브랜드 보호

○ 고품질 농림수산물 수출에 매우 중요한 상표 관리 등 브랜드를 보호한다(권리 침해 대책 매뉴얼 작성).
○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 대해 신품종 육성자권 보호를 위해 체제정비를 요구한다.

그림 1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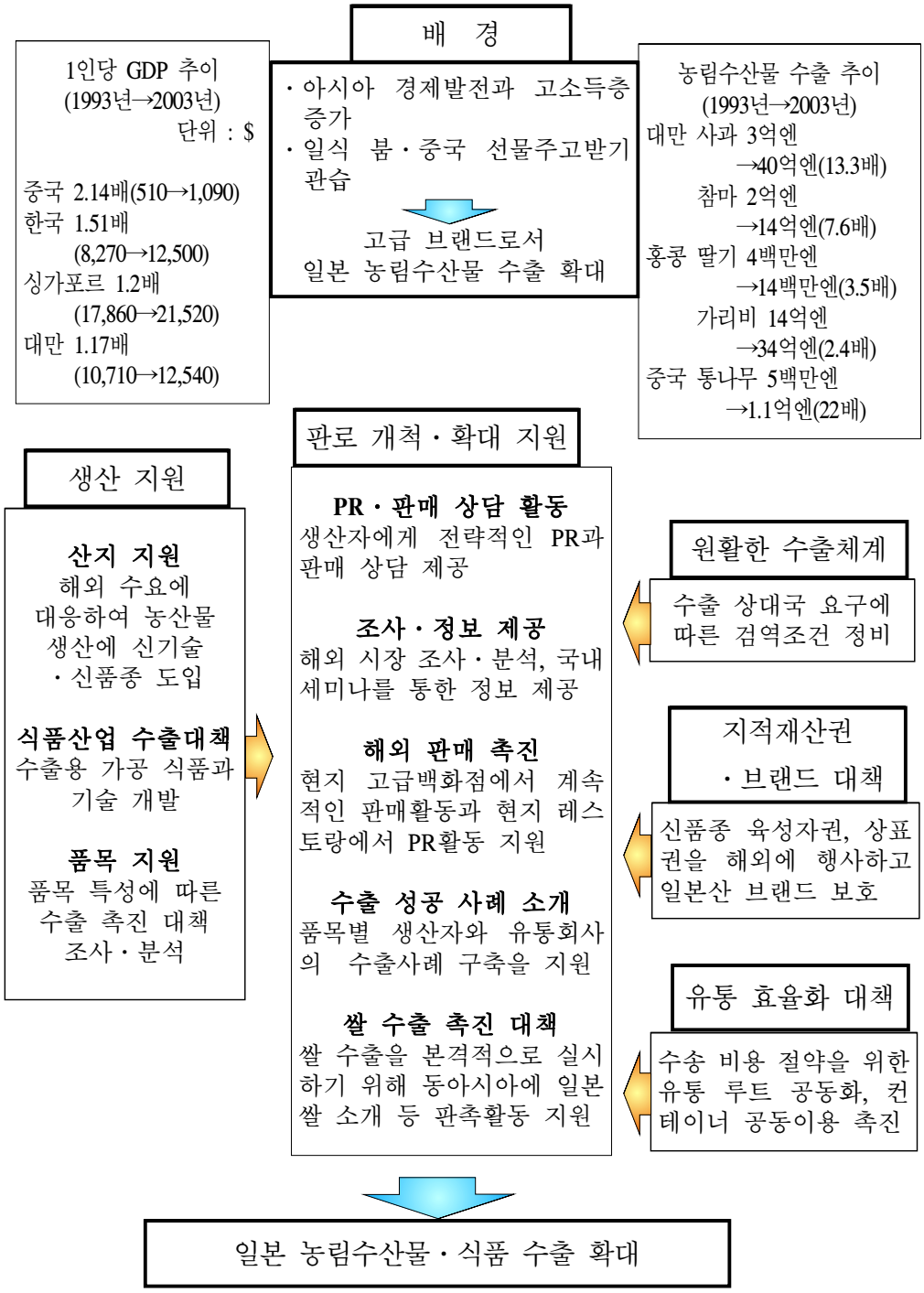

2.4. 수출지향 생산·유통체제 확립

○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 신기술·신품종을 도입하여 수출 시장 수요나 기준·규격에 맞게 생산하고 타국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 품질보호·비용삭감을 위해 수출용 포장, 선도유지 시스템, 유통 수단 공유화 및 수출용 유통루트 개발 등 유통체제 정비를 도모한다.

○ 수출지향 생산·유통체제 확립에 필요한 고품질·저비용화를 위해 생산·유통 기술이나 신품종 도입 등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을 위한 생산체계를 비롯하여 유통·수출체계,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리가 유기적 관련을 갖도록 <그림 1>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농림수산물 수출 배가사업 실시요령

2006년 4월 25일 농림수산 사무차관 통지에 따른 사업 실시요령 중 사업의 취지와 목적, 사업 종류와 내용을 소개한다.

3.1. 취지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이 고품질이며 안전한 이미지를 얻으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농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 추진 본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출 금액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두 배 늘리는 수출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실, 수산물 등 앞으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의 수출액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수출에 노력하는 사업체에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서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를 가속화

하려고 한다. 또한 일본 브랜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 고유의 품종 보호를 위해 DNA 분석에 의한 품종식별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3.2. 목표

농림수산물 수출 배가 추진사업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농림수산성 정책평가 기본계획(2002년 3월 29일, 농림수산 대신 결정)에 입각하여 설정된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2004년 2,954억 엔에서 2009년 6,000억 엔으로 두 배 늘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다.

3.3. 사업 종류, 내용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사업 실시 주체는 다음과 같다. 또한 사업 실시 주체 선정은 농림수산성대신 관방국제부장 또는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3.3.1. 농림수산물 수출 배가 중점 추진 대책

가. 사업 내용

과실, 수산물 등 앞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에 대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수출 환경 정비 또는 시장조사, 판매촉진 사업 등의 수출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① 해외 수출 환경 조사

사업 실시 주체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해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호・문화・풍습・소비동향을 조사한다.

② 해외 수출 환경 정비

해외 수출 환경 정비의 추진 : 해외 관계 단체에 대해 취급 물품을 사용한 일식(日食)을 인지시키고 해외 판매 촉진에 협력을 구한다.

수출 산지 체제 정비 : 수출 상대국 식물 검역 조건에 적합한 생산지역 환경 정비를 통해 수출 정착화를 도모한다.

③ 해외 판매 촉진 활동

해외 백화점에서 판매활동, 레스토랑에서 일식 전시회 개최, 효과적인 광고 활동으로 취급 물품 판매량 확대를 도모한다.

나. 사업 실시 주체

○ 사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연합회
○ 상공조합 또는 상공조합연합회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업협동조합(또는 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또는 연합회)
○ 민법 제34조(학술, 예술, 자선, 종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특별 인가단체(국제부장이 인증한 단체)

3.3.2. 품종 보호를 위한 환경 정비

가. 사업 내용

일본 브랜드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 고유 품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DNA 분석에 의한 식별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① 고유 품종 권리 보호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고유 품종에 대해 품종을 식별하기 위해 DNA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권리 보호를 도모한다.

② 화훼 종묘의 품종 식별 기술개발 확립

품종 등록 수가 많은 화훼에 대해 DNA 분석에 의한 품종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부정하게 생산된 화훼의 수입 방지 대책에 활용하며 품종 식별 기술

이 확립된 품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함으로서 보다 고품질 화훼의 수출 촉진을 도모한다.

나. 사업 실시 주체

○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 민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특별 인가 단체(생산국장이 인증한 단체)

자료 : **http://www.maff.go.jp/sogo_shokuryo/yusyutu/data.htm**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사례

정 은 미*

국제화·개방화 시대는 낮아진 국경 장벽을 넘어 수입 농수산물·식품이 물밀 듯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넓은 세계 식료품 시장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열려있다.

세계 제일의 농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은, 세계적인 일식(日食) 붐과 건강·안심·안전이라는 고급화 이미지를 갖춘 자국 농림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지금까지 수세로 일관해 온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 종교, 식문화, 제도·정책이 다른 해외 시장에 농수산물·식품을 수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불굴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민간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성도 지속적인 판촉활동, 각국 수입제도나 유통 실태에 대한 시장 동향을 조사하며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3사례는 농림수산물 무역원활화 추진사업으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9개 지역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해외 수출사업 담당자가 발표한 수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1. 사례 1[1) :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 가능성

1.1.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의 현실

일본 국내 농업 생산액은 7조 엔 규모, GDP의 1.4%인데 반해, 식료 수입 금액은 국내 생산에 버금가는 6조 9천억 엔이다.

수출 실적 상위 20위의 리스트의 1, 2위는 사과가 42억엔, 아오모리(青森)현의 참마가 15억 엔이고 농산물만으로는 70억 엔이다. 그 외 농산물은 농림수산물에 분류되지만 특수한 품목들이다. 또 수출 3위는 참치류인데 일본에서 잡힌 가다랑어, 참치류를 한국, 중국, 태국에 수출하고 통조림으로 다시 수입한다. 또는 이들 3국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수입이다. 연어, 송어, 명태도 같은 형태이고 가리비는 유럽에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품목이다.

농산물 중 대만에 수출되는 사과가 많은 이유는 국교가 없는 중국에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사과는 대량이 동남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데 대만에만 수출되지 않는다. 더구나 2000년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맹하여 수입규제가 철폐되었다. 이때부터 급격히 일본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사과는 대만 시장에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아오모리 현의 사과 도매가격을 높이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청과물이 식물방역법의 규제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만, 한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이나 유럽도 자유롭게 수출 할 수 없다. 중국도 아직 수입 수속이 외교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1.2. 대금 회수의 과제

수출은 회수가 확실한 국내 비즈니스와 달리 수출대금이 정확히 회수될 수

1) 福田高志 : 伊藤忠商事 농산물수출입담당(2005년 9월 26일)

있을까 언제나 걱정된다. 청과물 무역에서는 세계 무역의 주류이며 기본인 LC(신용장)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여 물품을 보고나서 송금이나 BC(buyers credit)로 대금을 결제한다. 새롭게 수출을 시작할 경우 처음부터 LC는 아주 분명한 물품이 아니고서는 무리이다.

30년 전 회사가 아오모리 현 사과수출협회 총대리점을 운영할 때 유럽에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 사과아가씨를 데리고 일본 사과를 선전하며 스웨덴과 핀란드에 수출을 시도했다. 그 때는 거래처가 단 한 회사 뿐이었기에 LC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경쟁이 있는 경우라면 LC가 아니라 송금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다. 송금은 무역회사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원격지 거래에서 송금은 보내지 않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양상추를 수출하려고 당시 대규모 생산자와 거래를 시작하려고 했다. 무역회사의 브랜드로 포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고객을 찾기 위해 실제로 다양한 소비처에 편지나 팩스를 보냈으나 반응하는 고객이 거의 없었다. 찾아 온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보내는 상품 내용도 모르는데 거래가 이루어질리 없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반드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확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은 예외가 빈번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거래를 위해 만난 사람을 신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1.3. 경험에서 얻은 교훈

홍콩, 싱가포르는 식물검역법 규제가 없이 일단 물품을 컨테이너에 담아 보내면 송장이나 방역 내용의 서류는 대부분 통과되는 매우 자유로운 시장이다. 수출할 때는 경쟁이 가장 심하지만 규제가 심하지 않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장에 시험삼아 팔아 보는 것이 가장 알기 쉬울 것이다.

서양자두를 시험삼아 팔아 본 적이 있다.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서양자두도 품질이 빨리 변하고 한 품종을 겨우 1~2주밖에 취급하지 못한다. 6컨테이너

를 보냈는데 모두 클레임(보상 청구)에 걸릴 때가 있었다. 출하할 때는 맛이 좋았어도 도중에 변질되기 쉽기에 도착단계에 도무지 무슨 맛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눈물을 삼키며 6컨테이너 전량을 헐값에 팔았다.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까지 가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버렸다. 6컨테이너 금액(6만 달러=1,500만엔 정도)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는데 그 후 수입업자로부터 "당신들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약 위반에 대해 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보고 확인했다는 것이 신용을 얻었다. 따라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더라도 버리기 보다는 현지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수출에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을 때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클레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현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 말만 듣고 불신감이 생긴다.

청과물의 경우는 국내에서 계약 거래를 추진하고 국내 거래로 표준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서로 계약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상대를 신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제 발생시에 서로 성실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국내, 수출, 수입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1.4. 식문화 수출로 확대될 가능성

일본 식문화는 세계적으로 조용히 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초밥을 중심으로 한 일식은 유럽에서 거의 일반화 되었고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며 중급 수준 이상의 외식으로 일식을 선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만 7천개의 일식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나 일식의 식재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지금 속도로 중국이 발전한다면 미국과 유럽처럼 중국에서도 일식이 대중 소비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세계 제1의 식품(식재료가 아님) 수출국인 프랑스는 30년 전 국내 와

인과 감자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고 도심에는 미국의 페스트푸드 점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그 때 와인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수출이라는 방법, 나아가 프랑스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막았다.

일본 식문화도 마찬가지 방법이라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단순히 청과물 수출만이 아니라 일식의 먹는 법, 메뉴, 영양 섭취법을 일본 식문화와 함께 수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출촉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5. 농산물의 새로운 마케팅인 재배 및 육묘 기술 수출

중국에 수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2005년 여름 중국에 부임하여 중국 내에서 생산된 양상추나 딸기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시장을 조사했다. 그 때 느낀 것이지만 딸기 수출은 검토된 경우가 있어도 딸기 묘 수출은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딸기 묘는 각 현 농업시험장이 개발하고 묘를 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다른 현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당치도 않다고 말한다. 중국은 일본에 냉동 이외의 딸기를 수출할 수 없고 2005년 중국에 종묘법이 만들어져 일본 종묘 특허권이 지켜질 장치가 만들어졌다. 꼭 중국에 묘를 수출하여 그곳에서 품질 좋은 품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싶다. 수출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식문화 수출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재배기술이나 육묘 기술을 무방비 상태로 해외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치를 마련하여 중국에 수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국 국내에는 품질 좋은 일본 딸기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 유출된 묘가 있다는 것인데 유출되었더라도 중국에서 종묘권을 지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수출 촉진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

뉴질랜드 제스프리라는 키위 수출회사는 뉴질랜드 시험장이 개발한 골드키위를 일본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일본 에히메(愛媛) 현에서 재배하고 전량 수

매하여 일본에서 판매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생산자에게 묘를 분양하여 재배된 키위를 전량 수매하는 형태로 세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현물 수출은 제약이 많기에 앞으로는 기술, 특허, 시스템 수출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종류나 목표가 누구인가를 정하고 나서 일본에서 상품을 직접 수출할 것인가, 기술을 수출할 것인가, 특허권을 수출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사례 2[2) : 수출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

일본 식문화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고 세계 각국에서 일본 농산물 견본시장이 개최되며 큰 인기가 있다. 일식이 균형 있는 영양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건강 지향적 생활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일식을 멋있다고 인식하고 일식을 즐기고 있다. 단지 붐이 아니라 정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달리 표현하면 엉터리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 맛, 분위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현지에도 일식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방콕, 대만에 수출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과제는, ①현지에서 수입 수속 문제, ②수입 허가 문제, ③식물검역, ④관세 문제, ⑤통관 후 인프라 문제, ⑥수출 거래처에 따라 대금 회수의 문제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이미 미국, 호주, 남미에서 농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

2) 安齋良邦 : 주식회사 상그로브푸드 대표, 동경 오타도매시장 청과물중도매인(2005년 9월 26일)

2.1. 일본 브랜드 확립이 중요

3년 전부터 수출업무에 도전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일본 브랜드 확립 전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①상품을 소개할 상품 가이드 북 작성, ②상품의 품질과 안전 보증, ③수출자재와 수출용 시설 개발이다.

2.1.1. 상품을 소개할 상품 가이드북 작성

세계에 통용되는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공통출하 매뉴얼이 필요하다.

복숭아를 예로 들면 품종갱신이나 변화가 매우 빠르다. 품종 변화, 출하시기, 출하규격(색깔, 형태, 크기, 용량 등)을 통일해야 한다. 수입국 소비자가 일본산 상품에 대해 판단할 근거없이 기존 국내 출하체계의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려고 한다면 거꾸로 수출업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다. 국가마다 선호하는 크기나 색깔, 형태, 맛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출에 통일성을 갖기 위해 공통출하용 매뉴얼 책자가 필요하다.

2.1.2. 상품의 품질과 안전 보증

일본 농산물, 상품, 기술은 고품질이고 안전·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 외국이 많다. 일본은 공격적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품질과 안전성을 증명하거나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보증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과 생산자가 유럽 출하를 목적으로, 큰 종류의 사과를 제시하자 유럽(특히 영국)에서는 '말이나 가축 사료용 사과'라는 말을 들었다.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손에 들고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영국이나 유럽에서 통용되는 사과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작은 크기의 사과를 수출했지만, 유럽에서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보증인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GAP : 유럽소매업조합 적정 농업 규범)이 없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판매를 위해서 EUREPGAP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기에 수출 2년 만에 취득했다. 중국은 유럽에 수출하는 양이 많기에 EUREPGAP 검토에 들어갔고 곧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농산물은 사과와 배 두 가지 뿐이며 나머지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 중국 농산물 시장이 자유화 된다면 EUREPGAP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3. 수출자재와 수출용 시설 개발

복숭아를 대만으로 수출한 사례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대만에 가는 수출은 청과물 시장에서 조달하여 컨테이너에 싣는다. 그러나 고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상품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하지 않고 상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출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직접 산지에 가져가 실었다.

또한 골판지 상자를 강화하기 위해 1매당 비용 65엔 상자를 75엔으로 높였고 컨테이너 1개(1,400박스 적재)당 1만4천 엔이 추가 소요되었다. 강화 골판지 상자를 1,400개만 주문할 수 없었으므로 1만 개를 주문하여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으며 즉시 결정했다. 조직단체가 한다면 이처럼 즉각적인 결정은 좀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렛트는 개발했다기 보다 특별 주문으로 만들었다. 농협(JA)에서도 산지 상품을 위한 전용 파렛트를 어지간해서는 만들지 않는다. 이 파렛트는 약 3,000엔으로 20개에 6만엔이다. 직접 경비를 지불하여 파렛트를 주문하도록 업자와 절충하여 1주일 후에 도착했다.

복숭아 골판지에 맞는 전용 파렛트를 만들면 이제까지 사용해 온 것보다 2매 많은 22매가 들어가 운임이 절약되고 골판지 상자를 강화하여 36%나 운임이 낮아졌다. 컨테이너를 산지까지 가져가는데 경비가 들지만 운임 절약으로 효과는 있었다.

2.2. 수출에서는 즉시 결정한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 중요

수출에서는 즉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실행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처인 수입국을 방문해 보면 이미 남미 칠레나 미국, 캐나다에서 세일즈맨이 다녀간 상황이다. 사과는 남미 칠레에서 40~45일이면 도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본 국내 시장 유통 상품을 국내 상황의 연장선에서 해외로 내보내며 내용물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내용물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용물은 물론이고 포장을 비롯한 수출용 자재와 시설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천할 각오가 필요하다.

3. 사례 3[3] :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출의 현상과 과제

일본이 농림수산물 수출에 주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농림수산물 수출 업무를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시장은 있다”는 사실이다. 고객은 일본의 물품을 찾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팔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팔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3.1. 농림수산물 수출에 대한 인식

현재 각 현이나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서 보면 모두 “일본 상품”이라는 관점이기에 그 차이가 발생한다. 수입업자가 찾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로 본다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본의 현 단위나 지역단위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현실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큰 의미

3) 八幡卓美 : 주식회사 익스트레이드 대표(2005년 11월 22일)

에서 중화경제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나 시장은 다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에 '그 중 몇 %가 소비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어렵다. 또한 중국은 인구의 7할이 농업종사자이지만 홍콩은 농업종사자가 거의 없이 인구 700만 명이 소비인구이다. 수입 규제, 상업 규칙에 대해서도 각각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 수출업자가 각국의 수출 업무 전부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나는 대만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사과나 배가 수입금지에서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품목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하나 현재로는 그 정도이다. 한편 홍콩은 완전 자유무역항이고 식물검역도 없다. 대만은 식물검역 제도나 법령이 일본과 아주 비슷하다. 일본 큐슈지역과 매우 가깝고 배나 비행기도 자주 오가는 이점을 살려 현재는 이러한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3.2. 일본산 농산물 평가와 수출 가능성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대만 수입업자의 평가는 대단히 높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규격이 철저히 이루어져 두 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져도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산도 품질은 좋지만 두 번째 이후의 품질은 형편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산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재배이력은 필요 없다. 일본산을 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일본산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대만에서 팔리는 사과는 중국 산동성산이 10kg에 약 7달러, 한국산은 20달러 전후이지만 일본산은 30~50달러이다. 미국산은 상자 형태로 20달러 미만 정도이다. 일본산 사과는 거의가 후지이고 연 15,000~18,000톤이 거래되고 있다.

수출 가능성으로 무엇이든 팔리리라 생각하지만 무엇이 팔릴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현재 대만에서는 낫또(콩을 발효시킨 것, 일본 전통식품)가 유행이다. 일본 수퍼마켓 다이에의 낫또 판매장보다 넓은 면적의 판매장

이 있다. 건강에 좋다고 TV에 방송되자마자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팔리고 팔리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제안하고 판촉 활동을 펼쳐 시도해 보아야 한다.

단지 현지인에게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가서 시식시키고 한 번이라도 먹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놓아두고 멀찍이 둘러서서 보고만 있게 하면 손을 내밀지 않는다.

3.3. 검역과 수출 거래처 확보 과제

수출할 때 먼저 일본에서 식물검역을 받는다. 그리고 홍콩 이외에는 수입국에서도 식물검역을 받는다. 수입국도 당연히 자국민의 건강과 자연계를 지킬 목적으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앞으로 FTA로 식물검역 제도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심술궂게 식물검역 수준을 높이는 사태가 일어날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이미 대만에 수출되는 사과 등 일부 상품은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검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도 수입할 때 검역을 하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 보면 수출하는 곳에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몇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해외 바이어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다. 나는 30년간 무역업계에 있으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무역업 동료들에게 대만이나 홍콩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있다. 현의 판촉 활동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자신이 직접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경험하고 불만이 터지는 경험을 해가면서 서로가 상거래 철학을 알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 서서히 좁혀 가는 것이 좋다.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해 봐도 성공 비결은 좋은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바이어란 무엇인가? 좋은 파트너를 발견하려면 영업방침이나 전략을 세워 좋은 바이어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찾아야 할 것이다. 처음 갑자기 찾아가 좋은 수입업자나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3.4. 중국권 농림수산물 무역업자의 특징

중국권 해외 바이어 경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것,

둘째 상류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라면 집하장, 청과시장, 중도매인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여 한 종류의 판촉 활동에 중개기관이 5, 6개나 된다. 중국권 수입업자는 중개기관이 어느 비율로 수수료를 뗀다고 생각하고 흠칫 놀란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감각으로 말해 일본 상품, 특히 신상품은 비싼데, “중간에 많은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직접 거래하려고 한다. 중국권 수입업자를 산지에 안내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직접 생산자나 집하장에 전화를 한다. 일본 상관습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상관습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일본에도 일본 상관습이 있으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같이 만드는 일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도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인가 손해인가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번 거래의 연속으로 다음 거래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3년 후가 된다는 사고방식이 중국권을 비롯한 해외에는 아직도 많다.

다섯째, 그들은 가격에 엄격하고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도 무엇인가 살 때는 2, 3번 살펴보고 가장 값싼 곳에서 사는 경향이 있는데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곧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충동구매는 매우 드물다.

여섯째, 만나면 곧 자기 집안이 어떻다든지 자기 친척이 동경에 유학한다든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든지 무엇인가 연결되는 부분과 상거래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무역업자로서 이런 경향은 대단히 괴롭다. 어렵

게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3.5. 수출 인프라의 과제

홍콩에는 30, 40년 경험을 가진 업자가 있다지만 중국권에는 일반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취급에는 익숙하지 않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부분 아마추어이다. 예를 들면 딸기는 비행기 이착륙 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신선 농산물을 다루는데 일본에서 보통 만나는 거래업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교섭해야 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고 바로잡아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선도 유지나 화물 보호를 위한 포장에서 일본의 포장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일본 국내 시장용 포장을 수출의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 시장에서 미국이나 칠레에서 온 물품 포장을 보면 보기는 좋지 않아도 상품보호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 수출할 때 바이어로부터 포장에 관한 요청도 많은데 지금 일본의 산지나 유통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생산자나 단위농협이 해결할 수 없기에 수출용 포장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5년 복숭아를 취급했는데 절반 정도가 비행 이착륙 흔들림으로 인해 손상이 났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로부터 요청이 많지만 이에 곧장 대응하는 산지는 거의 없다. 이 대책만 있어도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상자 크기도 5kg로 팔기 어려워 2.5kg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6. 문제 발생시 대응

클레임은 어떻게 처리하며 대금결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매우 큰 문제이다. 여기에 반드시 상류를 담당하는 무역업자로서 역할이 있다.

기본적으로 클레임은 없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

로 사전 교섭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는 사전에 각서에 써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량 부족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정확히 보냈지만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선가 누락되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에는 '양방의 문제'로 매수자와 매입자가 보충해야 한다. 흑백은 반드시 가려지지만 흑백대로 해결하려 한다면 상거래는 계속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식물검역은 통과했지만 그쪽 검역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 책임으로 정해야 한다. 일본을 떠날 때까지는 수출업자 책임이지만 일본을 떠나면 수입업자 책임이라는 것이 내 기본 방침이다.

3.7. 농림수산물 수출 과제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방법을 강구하는 사이에 사정은 변한다. 반드시 실패는 있지만 실패한 경험을 살리면 된다. 눈앞의 실패를 책망하지 말고 실패를 성공으로 살리는 조직형태가 필요하며 우선 행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상품은 지역에서 거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역업자는 "역시 동경 시장에 가면 상품이 모두 모여 있기에 편리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동경으로 옮긴 후 아시아로 운반해야 하는데 낭비일 뿐이다. 역시 의사결정은 지역에서 해야 한다. 산지도 가깝고 세부 계획 작성에도 편리하므로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지역의 상거래를 통하며 그 지역의 항만을 이용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의사결정은 동경에서 하고 지역에서는 단지 출하만 한다는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해외 마케팅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각 현에서도 농림수산물 수출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 생산자, 상거래 관계자, 수출입업자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하고 싶다.

넷째, 현 단위의 농림수산물 수출 활동이 동일 품목에 한해 다른 현과 내용의 연속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기 바란다. 각 현마다 자체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매우 애쓰고 있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모두 '일본산'이다. 최소한 몇 개의 현이 연합하여 큐슈 지역, 시코쿠 지역, 추코쿠 지역이 하나의 단위로 상품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복숭아는 5월 하우스부터 추분까지 취급하고 싶은데 후쿠오카는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되므로 한 현만으로는 상거래가 될 수 없다. 산지를 광역화 하여 계절별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수출하려고 하는가? '수출하면 지금까지 100엔 이던 것을 200엔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수출함으로서 해외 시장을 볼 수 있고 또한 파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겠는가?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보통 기업 발상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출에 도전함으로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것이 보인다. 생산자나 관계자의 최대 장점은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다. 무역회사도 마찬가지로 매번의 이익보다 시행착오로 비싼 수업료를 물어가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료 : **http://www.maff.go.jp/sogo_shokuryo/yusyutu/seminar.html**

중국, 농민공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박 기 형*

중국 국무원은 2006년 3월 27일 '국무원 농민공문제 해결에 관한 몇 가지 의견'(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양회(兩會)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처라 할 수 있다. 정책입안의 의의 및 원칙, 농민공의 임금, 취업, 사회보장, 권익 등 10개 분야에 걸쳐 농민공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각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침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민공(農民工)에 대한 개념인식

농민공은 농민외출무공(農民外出務工)의 줄임말로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계층을 말한다. 주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계층이며, 유동성이 비교적 강하다. 농민공은 농한기 외부 취업인구, 농·공업 겸업 인구로 나뉘며, 도시지역에 장기간 취업해 있는 농민공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농민공은 개혁개방이후 주요 산업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중국의 현대화 및 공업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보장, 취업환경 개선

* 중국 길림대학 goodmanist@yahoo.co.kr +86-139-4306-2353

등을 통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의 유기적인 이농을 유도하여, 도농간 균형발전 및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촉진하고자 한다.

2. 정책입안 배경

2.1.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연계

농민공은 제조업, 건축업, 채굴업,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 각 부문에 진출해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 농민공은 도시발전,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며, 공업에 의한 농업, 도시에 의한 농촌, 발전지역에 의한 빈곤지역 견인이라는 발전모델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지향·자발적 선택·경쟁의 취업구조 형성을 촉진하여, 도시·농촌의 이중구조,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귀향후 창업하는 농민공들은 자본, 기술, 시장주의 경제관 등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농민공 문제의 해결은 안정적인 개혁발전의 전체 구도와 공업화·도시화·현대화의 순조로운 추진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2.2. 농민공 권익보호는 긴급과제

지난 몇 년간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은 농민공 문제를 고도로 중요시하여 왔고, 농민공의 권익보장 및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각 지방 및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임금·임금체불 현상이 가장 심각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여건, 미비한 사회보장, 각종 직업병 및 산업재해, 직업훈련, 자녀교육, 거주지 환경 등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들 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권익에 있어서도 뚜렷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곧 사회적 평

등·통합·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2.3.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사안

농업노동력의 비농업 및 도시로의 이동은 모든 국가의 공업화 및 도시화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중국 농업현대화의 필연적 과정이다. 현재 중국 농업인구는 8억 명 이상으로 농업부문의 잉여노동 비중 역시 매우 커, 잉여노동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동은 장기적인 특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 나가야 하며, 농업부문 잉여노동의 비농업 및 도시로의 이동 역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 구도와 전략적 측면에서 농민공문제의 중요성, 사태의 긴박함, 장기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정책의 지도사상 및 기본원칙

3.1. 지도사상

등소평이론 및 3개 대표(三个代表)론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과학적 발전관 및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개방적 사고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실사구시적 방향을 견지해 나간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도농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농민공의 권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정책과 관리를 완비하여, 체제개혁 및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도농 노동시장의 일원화 및 공평경쟁의 취업제도를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간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집행감독시스템을 구축하며, 농민공을 위한 도시 및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개발하고,

농민공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도시 농촌 경제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중국식 공업화・도시화・현대화의 원만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3.2.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5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공평하고 무차별적인 대우.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보장하며, 농민공의 도시진입에 방해가 되는 불평등한 규정 등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여, 농민공과 도시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 강화 및 완벽한 관리. 정부 직능의 변화를 통해, 농민공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관리를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과 지역 및 중개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민공의 실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종합적인 계획수립, 합리적인 유도. 농촌노동력의 내부(현지), 외부 전이를 동시에 실시한다. 농민의 도시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향진기업과 현(縣)급 지역경제의 발전을 통해 농민의 현지 비농업분야로의 취업을 확대한다.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수립, 분야별 지도. 농민공의 전출지 및 전입지 모두 농민공 관련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각 지역은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농민공의 권익보호와 농촌 잉여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현실을 기초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급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동시에 개혁과 발전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근본적으로 농민공 권익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구체적인 정책방침

4.1. 저임금 및 임금체불 문제

4.1.1.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제도 수립

제때에 정확한 금액의 임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임금지불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범화하여, 매월 혹은 고용계약에 의해 임금지불이 이행되도록 한다. 임금지불감독제도, 임금보증금제도를 수립하여, 농민공 임금에 대한 상습적 체불 및 착복행위를 근절하도록 한다. 노동보장 관련 기관은 농민공 집중 기업의 임금지불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과거 임금체불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강제적으로 은행에 정기적인 임금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투자항목에 대한 미지불 공사대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모든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시에 분할 지불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공사대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허가 및 관련 비준을 내줘서는 안 된다. 중점적인 감독이 필요한 건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임금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농민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업주는 사법처리하도록 한다.

4.1.2. 농민공 임금 합리적 수준 및 제고

농민공 임금관리의 규범화를 통한 농민공 저임금, 차별지급 현상을 개선하도록 한다. 각 지역은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고, 또한 시간당 수당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정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관련 직무에 관한 임금의 업계 참고기준을 수립한다. 휴무에 관한 정부 규정

을 준수하여 연장근무, 법정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지방의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제정·조정·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4.2. 농민공 노동관리의 법적 규범화

4.2.1. 고용계약제도의 엄격한 실시

모든 기업은 농민공을 고용할 때에 적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고용관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의 고용계약규정에 명시된 인턴고용 기간을 준수하고, 노동보장부문은 고용계약의 명문화를 추진하여,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어떠한 기업도 고용계약을 위반하여 농민공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

4.2.2. 농민공의 직업안전 및 위생보건에 대한 법적 보장

각 지역은 국가 직업안전 및 노동보호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집행하도록 한다. 기업은 반드시 안전재해예방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새로 고용된 농민공에게 안전과 위험사항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위험 직종 노동자에게는 적합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농민공의 직업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공 스스로의 자기 보호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부처는 산업안전 및 노동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뿐 만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것이다.

4.2.3. 여성 및 미성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아동 고용의 엄격한 금지

법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한다.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포유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미

성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3. 농민공 취업 지원서비스 및 교육의 강화

4.3.1. 도농간 취업제도의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실시

도시와 농촌에 분리되어 있는 취업관리체제를 개혁하여, 도시와 농촌이 일원화된 노동시장을 수립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한 농촌 잉여 노동력의 전업을 촉진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도시 및 농촌 노동자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각 지역 및 관련 부처는 농민공의 도시진입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불평등한 규정과 불합리한 제한을 더욱 축소해야 하며, 농민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비준 및 행정수수료를 없애고, 도시노동자 취업문제 해결을 이유로 농민공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4.3.2. 농민에 대한 전업 지원서비스 강화

각 인민정부는 농촌 잉여 노동력의 전업을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현향급 단위별로 취업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전업 농민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도시의 공공 직업소개기구를 농민공에게 개방하여, 정책자문・취업정보・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농민공 전출입 지역 간 협조를 강화하고, 취업교육・창업교육・노무수출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각종 취업서비스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불법 직업소개기구에 대한 단속을 통한 취업서비스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4.3.3. 농민공 직업기술훈련 강화

각 지역은 공업화, 도시화, 농촌 노동력의 전업의 필요에 따라 농민공의 기술교육을 전개해 농민들의 전업능력 및 적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농촌 노동력의 전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라디오, TV방

송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통해 전업의 기본적인 지식을 보급하며, 특히 빈곤지역 농촌노동력의 전업교육을 더욱 중시하도록 한다. 사용자의 직무훈련시설의 건립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유도한다. 또한 노동력 전입지역은 농민공의 규모를 현지 직업훈련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4.3.4. 농민공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

노동보장부, 농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재정부, 빈곤지원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들은 농민공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농민공의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정부에서 규정한 직공교육훈련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조직한 교육훈련에 사용하도록 한다. 각종 교육훈련기구, 공청단(共青團)[1], 부녀연합(婦聯)[2] 등의 대중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와 형식으로 농민공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 기업, 개인이 공동 분담하는 농민공 훈련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한다.

4.3.5. 농촌 직업교육의 확대

농촌 중등교육 졸업자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한다. 각종 직업기술학교의 농촌 모집규모를 확대하고,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빈곤 가정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현단위 직업교육센터의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중등교육과정에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그에 필요한 교육인력, 교재, 실습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1)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共産主義青年團)의 줄임말로, 국가 및 지방의 정치 활동에 참가는 등 사회 공공사무의 조정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이다.

2) 부녀연합: 중화부녀연합(中華婦女聯合)의 줄임말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공청단과 같은 사회단체이다.

4.4. 농민공의 사회보장

4.4.1. 농민공 사회보장에 대한 고도 중시

농민공에게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 요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농민공과 관련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공상보험(工傷保險[3]), 중대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양로보장문제를 해결한다. 농민공의 사회보장은 유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므로 보험관계 및 대우가 농민공의 전업과정과 함께 연동되도록 하여, 농민공의 부당한 손해를 줄이야 한다. 또한 농민공의 수입이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낮은 기준 설정 및 점진적 시행을 통해 사용자와 농민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4.4.2. 공상보험 범위 농민공으로 확대

각 지역은 '공상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를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모든 사용자는 농민공을 위한 공상보험에 가입하고, 공상보험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입은 농민공에 대한 재해정도와 노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공에 대해서는 공상보험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농민공이 비교적 많이 집중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비교적 높은 건설업, 채광업에 대한 공상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시공업체는 또한 위험성이 높은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공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4.3. 농민공 중대질병에 대한 의료보장문제의 해결

각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대질병 의료보장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민공 도시전입과정 중에 발생하는 입원의료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

---

3) 공상보험(工傷保險) : 중국은 2003년 4월 16일, 노동자가 업무상 상해 혹은 직업병에 의해 의료혜택과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상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상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를 제정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다. 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현지 실정에 맞는 지급율을 확정하고, 의료보험 결산체계를 농민공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지역범위 밖에서 중대질병을 얻어 보험 원적지로 돌아가 치료하려는 농민공에 대한 일련의 의료결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농민공에 대해서는 도시직공기본의료보험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농민공은 새로 시행되는 원적지의 농촌합작의료제도(農村合作醫療制度)[4]에도 가입할 수 있다.

4.4.4. 농민공에 적합한 양로보험 모색

낮은 보험요율을 가지며, 혜택범위가 광범위하고, 전이가 가능하며, 현행 양로보험제도과도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농민공 양로보험을 빨리 제시하도록 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농민공을 도시직공 기본양로보험을 전환시키고, 이미 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한 농민공은 사용자가 계속 납입하도록 한다. 노동보장 부문은 농민공 양로보험의 타 지로의 연계 및 전환 방법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한다.

4.5. 농민공을 위한 적절한 공공서비스 제공

4.5.1. 농민공의 도시 공공서비스체계로의 흡수

농민공 전입지 행정단위는 농민공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농민공에 대한 속지(屬地)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도시발전계획 수립, 공공정책 제정, 공공시설의 확충 등의 도시지역 정책입안 과정 안에 도시 지역에서 장기간 취업・거주하고 있는 농민공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지

---

4) 농촌합작의료제도(農村合作醫療制度) : 중국은 2002년 10월 농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시범지역을 정해 제한적 제도를 보급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가구 단위로 하여 농민은 매년 1인당 10위엔(동,중부 지역은 더 높음)을 납입하고, 각급 정부에서 20위엔을 보조하여 합작의료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현(시) 국유상업은행 혹은 신용사의 재정기금으로 예치하는 방법을 취한다.

역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해 농민공에 대한 도시 공공서비스체계로의 편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4.5.2. 농민공 자녀에 대한 평등한 의무교육 보장

전입지 행정단위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에 책임을 져야하며, 현지 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육예산에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일제 공립 초중교를 주축으로 농민공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고, 실제 취학 인원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불한다. 도시 공립학교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에 있어 규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비 및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도시 학생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한 전입지 정부는 농민공 자녀 의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경비 및 교원양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출지 정부는 남아있는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5.3. 농민공에 대한 질병예방 및 아동면역 체계

전입지역은 농민공에 대한 보건교육, 주거지에 대한 질병감시 강화, 특정 전염병에 대한 무상치료정책 등을 실시하여, 농민공 질병예방통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간다. 농민공 자녀들을 전입지 면역체계로 흡수하여, 국가면역계획에 따른 예방접종율을 높이도록 한다.

4.5.4. 농민공에 대한 계획생육(計劃生育)[5] 관리 및 지원체계

전입지를 중심으로 전입출지의 상호 협조아래 농민공의 계획생육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전입지 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계획생육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방예산에 반영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계획생육 및 성건강 관련 피임용 약품 및 기구 등의 무료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측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민공 계획생육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출지역은 농민

5) 계획생육(計劃生育) : 중국의 인구증감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으로, 국무원 산하 국가 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공 계획생육에 관한 홍보, 교육, 기술적 업무 및 '유동인구혼인출산증명'(流動人口婚育證明)>의 무료발급을 통해, 농민공의 혼인·출산 정보를 전입지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유동인구의 계획생육에 대한 정보 상호교환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4.5.5. 농민공 거주환경의 개선

농민공의 거주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조건에 대한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민공의 고용이 많은 기업은 적법하게 취득한 기업용지 안에 농민공 단체 기숙사를 계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농민공이 집중된 개발구 및 공업원구는 기업이 임대하는 노동자 기숙시설에 대한 공급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토지이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도농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민공 집거지역에 대한 계획,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 기초시설 보장능력을 제고한다. 각 지역은 도시지역에 장기간 취업하고 생활한 농민공의 거주문제를 도시주택건설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여건이 되는 도시 및 읍지역은 사용자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공적금을 납입하여, 농민공의 주택구입 및 임대에 사용되도록 한다.

4.6. 농민공 권익보장 기구의 확립

4.6.1. 농민공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정치권리의 보호

농민공 고용 기업은 직공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6]에 농민공 대표를 포함하여, 기업에 대한 민주관리 참여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농민공 호적지의 촌민위원회가 선거 혹은 농민공 권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려할 때는 농민공에게 즉시 통지하여, 적절한 방식을 통한 민주적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한다. 관련 기관과 사용자는 승진심사, 모범노동자 선발 등 각종 노동

6) 직공대표대회(職工代表大會) : 직공들의 기업에 대한 민주적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기업의 경영방침, 연도계획, 임금조정, 복지기금 등을 심의, 결정한다. 주석단 및 소위원회(혹은 조)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자 장려 프로그램에 있어 농민공과 도시지역 출신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농민공은 신체적 자유, 인격존중 등을 법에 따라 보장받으며, 농민공에 대한 욕설과 폭행,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4.6.2. 호적관리제도 개혁의 심화

도시지역에 장기간 취업·거주해 있는 농민공의 호적문제는 단계적, 조건부적으로 개선한다. 중소 도시와 소규모 읍지역은 농민공에 대한 호적제한을 적절히 확대하고, 대도시지역은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공의 호적문제를 적극적이며 타당하게 해결하도록 하며, 특히 모범노동자, 선진 노동자, 고급 기술공 및 기사, 기타 특별 공헌자 등을 우선 대상자로 삼는다. 구체적인 수용조건은 각 지역 도시계획 및 실제정황에 맞게 제정하고, 농민공 거주등록관리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4.6.3. 농민공 토지청부권의 보호

토지는 농민에게 있어 중요한 생산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이기도 하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청부관계를 안정화시켜 농민공의 토지청부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농민의 도시지역 취업사유에 따른 청부 토지의 회수는 있을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청부토지회수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농민은 외부 취업기간 중에 청부토지에 대한 경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부권의 위탁, 양도, 임대 등의 형식을 통해 토지경영권을 유전(流轉)할 수는 있으나, 방치할 수는 없다. 농민공 토지청부경영권의 유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이며, 유상적인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강제 혹은 제한할 수 없으며, 억류 및 불법적 불입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토지유전에 의한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4.6.4. 농민공 권익보호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

노동보장에 관한 감찰, 법 집행력의 강화, 노동보장 감찰조직의 구성 등의 평시 감시 및 책임제도를 수립하여, 사용자의 농민공 권익침해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또한 농민공 권익보호 제보·고발제도를

수립하고, 관련기관은 농민공의 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개선하도록 한다. 농민공이 신고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및 산업재해에 관한 사건을 우선 심리하도록 한다. 농민공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및 법규를 조속히 제정을 하도록 한다.

4.6.5. 농민공에 대한 법률서비스 및 법률구조 업무

농민공은 법류구조의 중점대상이다. 농민공의 법률구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다. 임금 및 산업재해 배상에 관한 법률구조에 대해서는 경제조건 심사를 면제한다. 관련 행정기관 및 업계 협회는 법률서비스 지원기구의 농민공 관련 소송 및 비소송 화해조정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및 관련 법률인력들의 농민공 관련 법률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한계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민공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도록 한다. 정부는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구조기금을 할당하여, 농민공 법률구조 경비로 충당한다.

4.6.6. 공회(公會)[7]에 의한 농민공 권익보장 역할의 강화

사용자는 법에 따라 농민공의 공회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각 급 공회는 노동계약, 임금, 노동조건, 직업안전 및 위생을 중점으로, 사용자가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여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공회는 노동보장 감독기능을 십분 활용한 대중적인 노동보호 감독·감찰제도를 실시하여 안전생산에 대한 대중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공청단, 부녀연합 등의 사회단체를 통한 농민공 권익 보장을 강화하도록 한다.

---

7) 공회(公會) : 공인(工人)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4.7. 농촌 노동력의 현지 및 부근 지역으로의 전업 촉진

4.7.1. 향진기업 및 현(縣)단위 지역경제의 발전 및 현지 전업수용능력 확대

각 지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산업정책기조아래 취업창출능력이 높은 노동집약형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장려하여, 농촌지역의 2차 및 3차산업, 특색경제, 농업산업화 경영, 농산품가공업 등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향진기업과 비공유제 경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여, 더욱 많은 농촌 잉여노동력이 현지에서 전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현급 지역경제 발전과 상관된 정책을 연구・제정하여 현급 지역경제 능력을 확대하도록 한다.

4.7.2. 관련 산업의 중서부 이동을 통한 농민의 현지 취업기회 확대

동부지역 관련 산업의 서부지역 이동을 적극 유도하여, 농촌 노동력의 현지 전업과 동서간 상호보완적 공동발전의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산업정책을 통해 대중도시와 연안 발전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 및 자원가공형 기업의 중서부지역 이동을 유도한다. 중서부지역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전제아래 동부지역 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지 농촌노동력의 전업에 적극 활용한다.

4.7.3. 농촌기초시설 건설 확대를 통한 농민의 취업 및 소득 증대 촉진

도농지역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설비 건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투자구조의 조정을 통해 기초설비 건설의 우선순위를 농촌지역에 두고, 농촌의 생산조건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 지원체계, 사회자본금의 참여, 풍부한 농촌 노동력의 상호결합이라는 투입체제를 조속히 갖추도록 한다. 농촌 기초설비 건설은 현지 원자재와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민의 취업기회 및 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중소형 사업을 위주로 한다.

4.7.4. 소도시 지역 개발을 통한 산업클러스터효과 및 인구흡수능력의 제고

점진적 추진, 용지절약, 집약적 발전, 합리적인 배치의 원칙에 따라 소도시 지역개발의 지원역량을 확대하여 공공설비를 완비하도록 한다. 소도시 경제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도시 경제발전을 통한, 향진기업의 소도시 집중을 유도한다. 또한 각종 우대정책을 통한 외지 취업 농민공의 소도시 회귀 창업 및 거주를 유도한다.

4.8. 농민공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및 개선

4.8.1 농민공 문제 해결의 중요성 인식

농민공 문제의 해결은 각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직무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민공 문제를 중요 임무로 삼아, 도농지역 취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촌노동력 문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농민공 업무의 주요한 책임은 지방에 있으므로, 각 지방은 명확한 업무목표, 임무, 조치를 수립하여,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농민공 관리와 행정지원업무에 대한 각종 경비확보체계를 구축하여, 농민공의 취업, 계획생육, 자녀교육, 치안관리 등과 관련된 경비를 일반 재정예산지출범위 안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4.8.2. 농민공 업무에 관한 협조시스템 구축

국무원은 농민공 업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국 농민공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도·조정하도록 한다. 연석회의는 국무원 관련 기관,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하고, 연석회의 판공실은 노동보장부 산하에 둔다. 각각의 관련 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업무와 연계된 업무를 분담하여 농민공에 대한 각종 정책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지방 인민정부 또한 상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민공 업무를 조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입지와 전출지의 기층조직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농민공에 대한 교육, 유도, 관리 업무를 공동 추진하도록 한다.

4.8.3. 농민공 자질향상 유도

농민공은 중국 산업인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농민공의 정치사상, 과학문화 생산기술 수준은 중국 산업수준, 경쟁력, 현대화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공의 자질 향상에 주목해야 한다. 농민공이 자발적으로 취업 및 창업교육에 참여, 직업기술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기술 및 취업·창업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농민공에 대한 법률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윤리 및 공공도덕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성취감과 신뢰를 제고하고, 각종 사회적 규칙 및 공중도덕을 존중하도록 한다. 도시로 진입하는 농민공들은 도시생활에 적응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도시의 공공질서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4.8.4. 지역사회(社區[8]) 관리서비스 기능의 주요 역할

개방형, 다목적 기능의 도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농민공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민공의 지역사회 자치참여를 장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고취하여, 자체적인 관리, 교육, 지원 능력을 제고한다. 지역사회의 융합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농민공의 도시생활 유입을 촉진하고, 도시민과의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및 문화시설을 더욱 확보하여, 도시 공공문화시설이 농민공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 여건이 되는 기업은 농민공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여가활동을 통해 농민공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한다.

4.8.5. 농민공 관련 통계작업의 개선

통계국, 공안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등 기관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민공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의 상호공유를 통해 농민공 관리와

---

8) 社區: 영어로 Commun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공동사회, 지역사회를 지칭하며, 중국의 사전적 의미로는 구(區)아래의 행정단위 기구 혹은 주민위원회의 활동범위에 속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원업무을 위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입지와 전출지는 농민공 통계정보의 교류와 업무를 서로 협조하도록 한다.

4.8.6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사회 각 계층은 농민공에 대한 이해, 존중, 보호의식을 고취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한 농민공 지원 공익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언론매체는 당과 국가의 농민공 관련 정책방침과 개혁개방 및 현대화 과정 중에 보여지는 농민공의 공헌 및 모범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농민공 권익보장에 대한 여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우수 농민공에 대한 표창을 장려하고, 각 지방 및 사용자의 농민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널리 보급하여, 농민공 지원 및 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끝으로 각 지역, 관련 기관은 정부의 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각종 법률 및 법규, 정책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무원 농민공문제 해결에 관한 몇 가지 의견'(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각종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업무추진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농민공 관련 각종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자료 : http://www.gov.cn/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

중국, 2006년도 1분기 농림수산물 생산자가격

박 기 형*

중국의 31,000개 농업생산경영단위의 생산자가격조사에 의하면, 2006년 1분기 농림축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4% 상승하였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자가격이 각각 4.8%, 8.9%, 2.3%씩 상승하였고, 축산물은 1.6% 하락하였다. 식량작물은 동기대비 1.4% 하락하였으며, 면화는 회복상승 중이며, 유채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6년 1분기 중국 농산물 생산자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4.8% 상승

2006년 1분기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동기보다 1.4% 하락하였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거시조절정책을 펼침에 따라 작년 중국 식량총생산량이 484백만 톤을 기록하며, 3.1% 성장하였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약 2,15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2004년 과열된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1분기 곡물, 두류의 생산자가격은 동기보다 각각 1.4%, 5.6%씩 하락하였으며, 서류의 가격은 9.9% 상승하였다. 주요 식량작물 중 소맥은 5.1%, 옥수수는 0.6% 하락하였다. 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포니카만이

* 중국 길림대학 goodmanist@yahoo.co.kr +86-139-4306-2353

상승세를 보였다. 벼는 전체적으로 1.1% 하락하였는데, 조생종 인디카가 2.1%, 만생종 인디카가 2.5% 하락하였으나, 자포니카는 1.5% 상승하였다. 두류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두 6%, 녹두 3.7% 각각 하락하였다.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산지의 경우 1.6%, 주소비지는 0.5%, 중간지는 1.4%씩 하락하였다.

면화의 생산자가격은 동기대비 14.5% 상승하며, 농산물 생산자가격 총지수를 0.3%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면화의 가격상승은 작년 중국 면화파종면적이 11.1% 감소하여 생산량이 작년보다 9.8% 감소하였고, 또한 중국내 면화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초과수요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채류의 생산자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6.9% 하락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유채씨가 9.5%, 땅콩이 2.5%씩 하락하였으며, 참깨의 경우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당류의 가격은 35.1% 상승하며, 총지수를 0.4% 끌어올렸다. 이러한 당류의 가격상승은 작년 중국 당류 생산량이 0.2% 감소한 가운데, 국제시장 가격이 높아 수출량이 늘면서 중국 국내가격의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중국의 설탕수출량은 4.9만 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하였다. 사탕수수의 생산자가격은 동기대비 34.9% 상승하였으며, 사탕무의 생산자가격은 36.5% 상승하였다.

야채 및 과일의 생산자가격은 연휴와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각각14.2%, 18.1% 상승하였으며, 찻잎은 4.4% 상승하였고, 잎담배는 3.7% 하락하였다.

2. 임산물 생산자가격은 8.9% 상승

2005년 중국 목재생산량은 4746만 입방미터로 전년도 보다 8.7% 감소하였다. 목재수요의 증가에 따라 임산물의 생산자가격은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

으며, 2006년 1분기 목재의 생산자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7.1% 상승하였고, 죽재류는 12.1%, 고무유지 및 과실류는 9.7% 상승하였다.

3. 축산물 생산자가격은 1.6% 하락

2006년도 1분기 생돈, 가금류, 가금난류의 가격하락이 전체 축산물의 가격하락을 이끌었다. 생돈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4% 하락하였고, 가금류와 가금난류의 가격은 각각 4%, 4.1% 하락하였다. 이러한 생돈, 가금류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은 3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내 육류총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체 시장공급량이 증가하였고, 둘째, 작년 말 돼지연쇄상구균과 조류독감병균에 대한 우려에 의해 감소한 시장수요가 우려를 사라지지 않은 채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셋째, 축산물의 수출이 완만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우의 생산자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0.2% 상승하였고, 양의 생산자가격은 1.5% 상승하였다. 유제품의 생산자가격은 3.3% 상승하였고, 뉴똥[1)]의 가격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4. 수산물 생산자가격은 2.3% 상승

소비자 기호변화와 소비수준의 제고됨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2006년 1분기 수산물 생산자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5.2% 증가하였으며, 해수어류는 7%, 해수조개류는1% 상승하였다. 담수류는 공급원의 증가로 동기대비 0.5% 하락하였는데, 담수어류가 0.6% 하락하였고, 담수갑각류(새우와 게)는 2.2% 상승하였다.

---

1) 뉴똥: 견(絹)으로 짠 옷감의 한가지. 중국어로 毛絨으로 표기

표 1 2005/06년 중국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PPI) (전년도 동기=100)

	2005년				200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생산자가격 총지수	106.40	101.75	99.72	98.81	102.37
1.농산물	104.20	100.59	100.60	101.99	104.78
식량	106.62	99.46	96.78	97.75	98.57
곡물	107.95	99.74	97.11	97.81	98.61
소맥	109.41	99.07	95.81	95.18	94.92
벼	112.98	101.41	98.35	100.13	98.88
옥수수	101.15	97.64	95.67	96.30	99.40
두류	99.95	95.41	92.74	93.49	94.38
대두	98.12	94.02	90.89	92.14	93.96
서류	103.06	106.47	102.92	109.13	109.89
유류	99.40	88.70	89.02	91.07	93.10
면화	77.98	87.05	106.00	113.73	114.48
당류	107.60	104.16	94.93	117.66	135.05
잎담배	101.04	106.58	100.80	104.46	96.31
야채	105.52	105.65	109.41	108.23	114.24
과일	102.48	107.27	108.87	108.10	118.05
차잎	111.01	107.50	108.87	113.86	104.38
2.임산물	102.58	102.45	104.42	107.20	108.89
목재	102.92	104.54	105.06	101.64	107.14
죽제품	105.97	100.57	105.14	102.09	112.14
고무유지 및 과실	102.40	101.50	104.11	109.83	109.69
3.축산물	109.95	102.52	96.78	92.10	98.43
돼지	111.91	100.60	90.88	85.47	98.55
소	102.89	101.37	101.60	100.48	100.20
양	105.08	102.21	100.08	99.32	101.48
가금	110.51	107.23	105.61	97.38	95.95
난류	111.98	107.48	105.77	101.48	95.91
유제품	101.15	99.32	99.06	99.25	103.31
뉴똥	107.56	106.47	106.72	104.43	100.00
4.수산물	105.80	103.95	103.76	103.73	102.26
해수류	100.88	103.63	104.58	105.27	105.20
해수어류	100.17	104.51	105.88	104.92	106.96
해수조개류	105.05	100.94	101.35	106.17	100.98
담수류	110.36	104.25	103.00	102.31	99.54
담수어류	110.00	103.96	102.33	101.81	99.39
담수갑각류	116.78	109.31	114.88	111.08	102.18

자료 : 중국통계국,『통계보고』2006년 제36기, 2006.5.14

영국, 농촌주택 저가공급 프로그램

김 정 섭*

영국 정부는 농촌 지역에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사업인 '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 수요가 있으나 시장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카운티에서, 적절한 토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고 그곳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적정한 가격의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국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었다. 주택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보다 큰 도시나 타운(town)으로 이주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이주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도 점차 해체되는 과정을 걷고 있었다. 농촌 마을에 있는 학교는 아동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으며, 농촌 지방의 상점이나 간이식당들도 이촌하는 인구들이 늘수록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영국 정부는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민간 부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03년 6월에는 민간 부문이 토지, 부동산, 자원들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사업인 '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를 시작했다.

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 사업은 카운티(county)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택 수요가 있으나 시장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카운티에서, 적절한 토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고 그곳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Affordable Rural Housing 사업의 추진 주체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그 과정은 지방정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민간 자본 투자자, 건설업자, 주택관련 민간단체(예: Housing Association 주택협회), 영국 농촌청(Countryside Agency)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농촌주택 공급활성화 담당자(Rural Housing Enabler)'가 있다. 이 농촌주택 공급활성화 담당자가 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의 추진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독립적인 브로커(broker)로서 농촌 지역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 모든 절차에 실무적으로 깊게 개입하며 도움을 제공한다. 농촌주택 공급활성화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택지 개발에 적합한 장소를 발굴한다.

(2) 농촌지역계획에 책임이 있는 부서와 연락을 취한다.

(3)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평가한다.

(4) 지역사회 그리고 기초 지방의회(parish council)과 공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

(5)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나 건설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알리고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6)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업의 추진 절차

3.1. [1단계] 적절한 택지 선정

농촌 지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토지가 안고 있는 입지 상의 조건이 적지로 선정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타운 주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와 비교하여 더 큰 규모의 토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공급 장소, 일터, 기타 시설 등으로부터 너무 멀어도 안 된다. 대체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정주지역 안 또는 그에 인접한 장소가 적지이다. 해당 토지가 그런 조건에 있지 않다면,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자가 기존의 서비스 또는 물리적 환경 같은 조건을 그대로 두더라도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 교통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승용차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기피한다. 따라서 택지를 조성하려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인 것이 좋다.

3.2. [2단계] 지역계획 당국의 승인

2004년에 제정된 '계획 및 의무 구매에 관한 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에 따라, 지방에서의 계획은 '지방개발을 위한 기본 틀(Local Development Framework, 이하 LDF)'에 근거해야 한다. LDF는 지방정부가 작성한 '지방개발을 위한 계획 문서(Local Development Document, 이하 LDD)'들로 이루어져 있다. LDF는 다른 여러 분야들에 대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에 관해서는 LDF 수립 이후로부터 10~15년 동안에 필요한 신

규 개발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지역의 자연환경 상태와 지역 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LDF는 중앙정부의 국토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수립되는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Affordable Housing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토지가 계획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2.1. LDD에 지정된 지역

이 경우가 계획 시스템을 통해 적정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 가장 흔한 사례이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e)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LDD를 통해 쿼터를 지정한다. 그 쿼터 비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3.2.2. 토지 지정

아주 드물게, LDD가 특정 지역을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e) 공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여러 당국들이 공원권역 내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적정가격 주택 건설의 경우에만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LDD를 작성하기도 한다.

3.2.3. 예외적 농촌지역 정책(rural execeptional policy)

인구가 3,000명 미만인 농촌마을이나 정주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택지개발이 허용될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획당국이 택지개발을 승인한다. 이 경우 개발된 택지가 지역주민을 위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지역에서 적정가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개발자는 자신의 사업계획이 그 수요의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계획당국에 설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외적 농촌지역 정책은 원래는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토지를 택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원래부터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LDD에서 택지로 지정

된 토지에 비해 가격이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적 농촌지역 정책의 규정에 따라 택지로 승인된다면 그 때에는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한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LDD에 지정된 택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2.4. LDD 지정 지역 외에서의 승인

심지어는 인구가 3,000명 이상이며 LDD에 의해 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계획 당국이, 드물기는 하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방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택지개발의 필요를 느낄 경우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때에는 LDD 차원이 아니라 광역 정부사무소를 경유하여 내무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내무부 장관이 계획 승인권을 갖는다.

3.3. [3단계] 주택 수요 판단

'적정가격 주택 공급'이란 그것이 판매이든 임대이든 관계없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농촌 지역에는 이미 존재하는 주택들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방정부가 전통적으로 공급해왔던 공영주택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중간 수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다.

지방정부가 적정가격 주택 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면, 충분한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영국에서 모든 지역은 주택 수요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은 다양한 자료원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확인된 주택 수요가 너무도 커서 지방정부가 별도의 추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개발지구의 지가가 높은 프리미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역 주택 수요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주택 개발 및 공급을 하려는 모든 주체는 지방정부의 주택 담당자 또는 계획 팀과 접촉하여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에 관한 주택수요 관련 자료들이 쓸만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수요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또는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Rural Community Council)'가 표준 조사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가 수행한다. 농촌주택 공급활성화 담당자가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조사 결과,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정부는 새로이 공급될 적정가격 주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두 번째 단계의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지역사회와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지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대료 수준이나 모기지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필요로 하는 주택의 형태나 규모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받는다.

3.4. [4단계] 농촌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확보

이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토지소유자나 개발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거센 저항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 물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될 주택에 왜 그리고 누가 와서 살게 될 것인지를 인식시켜줌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기초 지방의회의 지지를 얻는 일이다.

3.5. [5단계] 건축 및 공급

앞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실제 건축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식의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옵션(op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

의 토지를 적정가격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3.5.1. 판매 또는 기부

다양한 주체들에게 토지를 판매할 수 있다. 주택협회, 적정가격 주택 건설회사, 개발업자, 지역사회 트러스트(community trust) 등과 같은 시민단체 등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토지 구매자들은 구매한 토지를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할 책임을 진다. 계획 승인은 토지매매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다. 어느 시점에 계획 승인이 나는지가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라는 이타적인 목적 하에서 지역사회 트러스트 등과 같은 단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토지 구입 비용이 절감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단체는 주택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5.2. 임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임대할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토지는 주택협회, 적정가격 주택 공급 회사, 개발업자, 또는 지역사회 트러스트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에 임대될 수 있다. 임대기간도 다양하게 설정되지만, 일반적으로 99년에서 999년 사이로 결정된다. 임대 방식의 토지 제공이 갖는 장점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동안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작지만 정기적으로 지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토지 위에 지어진 집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때 토지 소유자는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토지의 지속적인 관리 책임은 통상 점유자에게 있다.

3.5.3. 토지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적정가격 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책임과 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뜻한다. 대신 토지 소유자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임대

하여 직접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새로 지어질 주택에 누가 거주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약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의 유지 관리 방식도 결정할 수 있다.

4. 파트너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간에, 어떤 형태의 조직에게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지를 그리고 어떤 조직과 부동산 관리 계약을 맺을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주택협회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게 된다. 왜냐하면 주택협회만이 공공정책 자금을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 선택의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5. 주택 임대료의 결정

주택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5.1. 지분 공유를 수반하는 장기 임대

이는 거주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일부 구입하는 방식이다. 거주자는 소유 지분을 일부 매입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낸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자산 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에는 종종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5.2. 시장가격으로 주택 임대

어떤 농촌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이 더 적게 들기도 한다. 이 경우 주택을 시장가격으로 임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주택 수요충족에 기여하는 일이 된다. 지방정부는 대체로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은 '적정가격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나 주택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매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

5.3.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택 임대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현재 영국 농촌에는 주택협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많다. 일반 민간 기업들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면, 저가 주택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자금 조달

전통적으로 적정가격 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부문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6.1. 개인 투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스스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 경우 시장가격 임대와 시장가격 이하의 낮은 임대의 두 방식을 혼합하여 주택 임대료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일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

6.2. 기업금융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는 은행으로부터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융자 상품을 특화하여 공급하는 은행이 몇몇 있다.

6.3. 채권발행

개발자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이 이 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점차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적정가격 주택 공급사업이 리스크가 적고 일반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가격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6.4. 민간기업 투자

주택 개발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6.5. 공공 보조금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야 한다. 주택협회는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2006년 3월 현재 주택공사는 인구 3,000명 미만 농촌지역에 건축될 예정인 총 3,500가구의 적정가격 주택에 대한 보조금 할당 계획을 수립했다.

7. 시사점

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로부터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주택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2) 민간 부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전문적인 기능(농촌주택 공급활성화 담당자)과 정교하게 짜여진 사업추진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중앙정부가 주택공사나 주택협회와의 파트너쉽 관계를 통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자료 : **http://www.bitc.org.uk/resources/publications/new_guidance.html**

칠레, 육용우생산 개황

허 덕*

칠레는 쇠고기 수입국이었지만, 2002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개시하였다. 아직 쇠고기 수출은 양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매년 배증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식육 생산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급원 개척,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정국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이 시동되고, 2006년 2월부터는 수출전용 가축시설에 대해서는 공적관리하에 가축시설 등록이 의무화되어, 위생 현상의 향상·유지를 향한 대처도 강화되고 있다. 칠레의 육우 생산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육우산업 개황

1.1. 사육 및 생산 동향

칠레에서는 센티에고 이남의 비교적 추운 지역이 주요 축산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식육은 전국의 50%, 유제품은 60% 정도를 생산한다. 주요한 육우 사육지역은 남부의 제8, 제9, 제10주로 이들 3주에서 전체 사육두수의 70%를 차지하며, 방목사육을 중심으로, 겨울은 건초, 사일리지 등을 보조 급여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uhduk@krei.re.kr 02-3299-4261

표 1 주별 사육 호수 및 두수

주	사육두수		사육호수		호당 사육두수
	두	%	호	%	두
제1주	4,618	0.1	542	0.3	8.5
제2주	524	0.0	111	0.1	4.7
제3주	6,606	0.2	345	0.2	19.1
제4주	38,782	0.9	3,146	2.0	12.3
제5주	131,671	3.2	5,932	3.7	22.2
수도권주	164,014	4.0	5,790	3.6	28.3
제6주	155,997	3.8	7,404	4.6	21.1
제7주	367,447	9.0	17,313	10.8	21.2
제8주	550,432	13.4	29,316	18.3	18.8
제9주	784,336	19.1	43,258	27.0	18.1
제10주	1,587,557	38.7	44,436	27.7	35.7
제11주	168,770	4.1	2,048	1.3	82.4
제12주	137,674	3.4	577	0.4	238.6
전국	4,098,438	100.0	160,218	100.0	25.6

자료: 국가통계원(INE) 센서스 1997년

표 2 주별 도축두수

주	1997년		2004년		증감율
	두	%	두	%	%
제1주	4,873	0.4	2,744	0.3	-43.7
제2주	8,210	0.7	8,020	1.0	-2.3
제3주	2,645	0.2	49	-	-98.1
제4주	20,979	1.9	16,123	2.0	-23.1
제5주	79,733	7.3	52,524	6.4	-34.1
수도권주	500,259	45.7	272,718	33.2	-45.5
제6주	38,522	3.3	29,674	3.6	-18.8
제7주	52,774	4.8	29,399	3.6	-44.3
제8주	98,154	9.0	102,622	12.5	4.6
제9주	108,919	9.9	104,166	12.7	-4.4
제10주	147,554	13.5	178,732	21.8	21.1
제11주	12,645	1.2	11,805	1.4	-6.6
제12주	21,417	2.0	12,653	1.5	-40.9
전국	1,094,684	100.0	821,229	100.0	-25.0

자료: 칠레농업부 농업정책국(ODEPA)

도축시설은 이전에는 수도권 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7년 수도권 주의 도축두수는 전체의 50% 이상이었다. 최근 지방에도 인프라가 정비되어 유통이 용이해지자, 2004년에는 수도권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3.2%로 저하되었고, 거꾸로 주요 사육지역인 제 8～10주의 도축이 47.0%로 증가하고 있다.

1.2. 수급 동향

1.2.1. 생산 동향

칠레의 쇠고기 생산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계속적으로 감소가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는 1997년 이후 계속된 감소경향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이는 우유가격이 고가를 유지하여 낙농가가 착유우 임신두수를 늘리고, 수출을 위한 전용 거세비육우의 거래가격이 미국・캐나다에서의 BSE 발생 등에 의해 상승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는 1990년대에 쇠고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소비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2003, 2004년은 5% 정도에 달하였다.

표 3 쇠고기 수급표

단위: 톤

연도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참고)소비량
2000	226,364	86,313	108	341,521
2001	217,644	84,953	68	331,188
2002	199,957	102,062	3,524	359,210
2003	191,784	122,617	6,443	369,963
2004	208,259	126,225	9,021	287,191
2005	215,584	141,554	18,749	-
비고	지육베이스	냉장 및 냉동, 제품중량 베이스		냉장냉동 및 가공육, 지육베이스

표 4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쇠고기	342	258	226	218	200	192	208	216
(참고)								
돼지고기	123	172	281	303	351	365	373	411
닭고기	-	321	438	485	452	464	535	550

자료: ODEPA

표 5 종류별도축비율 추이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육성비육우	47.4	50.5	48.8	53.1	53.2	55.8	57.1
경산우	26.0	24.8	22.8	19.7	20.5	20.9	20.9
수소(거세포함)	7.3	6.5	4.6	4.7	4.7	4.6	4.4
미경산우	18.5	16.9	22.6	21.4	20.4	17.5	16.2
송아지	0.8	1.2	1.2	1.1	1.2	1.2	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DEPA

칠레 농업부 농업정책국(ODEPA)에 의하면, 2004년 도축두수 중 비육우가 전체의 57%, 경산우가 21%, 미경산우가 16% 정도이다. 두당 평균 지육 중량은 263.8kg(거세우, 2004년)으로 아르헨티나(276.7kg, 2004)에 비해 가볍다. 이는 광대한 팜파와는 달리 좁은 토지에서 사육하기에는 개체가 작은 편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대규모 생산국에 비하면 칠레의 연간 도축두수 80만두는 현재의 수급관계 상 적은 편이며, 이 때문에 5년간은 암소의 번식에 노력하는 한편 비육 육성우 출하를 늘리는 추세이다.

칠레에서는 곡물 비육장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칠레 국내에서는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도 살코기를 좋아하는 경향이며, 고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옥수수나 기타 곡물을 비육용으로 급여하는 비율은 적다. 다만 수는 적지만 곡물 비육장은 수도권주, 제7, 제8주에 존재하고, 콘 사일리지, 목초, 알팔파 건초 등을 조합하여 비육되고 있다.

표 6 패커-도축능력 순위, 2001년

패커	소재지역	도축두수(두)	전도축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Lo Valledor	수도권주	130,500	15.0
FRIGOSOR	제10주	73,400	8.4
Frigolifico DARC	수도권주	66,700	7.7
FRIOSA	수도권주	62,400	7.2
FRIVAL, Valdivia	제10주	54,600	6.3
Frigolifico Temuco	제9주	47,500	5.5
CAMER	수도권주	34,000	3.9
Cames Nuble	제8주	25,000	2.9
계		494,100	56.8

자료: INE

1.2.2. 소비 동향

2004년 1인당의 쇠고기 소비량은 23.7kg, 닭고기 28.8kg, 돼지고기 17.9kg 정도이다. 쇠고기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늘어난 이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2. 무역 관계

2.1. 수출입 동향

2.1.1. 수출

칠레가 본격적으로 쇠고기 수출을 개시한 것은 2002년 후반 이스라엘, 쿠바에 수출하면서부터 이다. 이전에는 혀, 내장, 피혁이 주였다. 2003년 7월부터는 EU 수출도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년 거의 배증의 페이스로 확대되고 있다. EU와는 2003년 2월에 발효한 FTA 협정에 따라 연간 1천 톤까지는 무

관세인 관세 할당치로 수출되며, 무관세 관세 할당치는 매년 100톤씩 확대된다.

2005년 쇠고기(가공육 포함)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7.8% 증가한 18,749톤이며, 수출 금액으로는 동 137.1% 증가한 5억 4,403만 달러(약 6,470억원: 1달러=1,190원)에 이른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전년대비 323.5%, 금액 베이스로는 282.8%로 급증함과 동시에,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량 베이스로 17.0%, 금액 베이스로 22.8%로 늘어나,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제2위의 수출지가 되고 있다. 제1위인 멕시코는 수출량으로 58.7%, 수출액으로 51.2%를 차지한다. 부산물 수출량은 전체의 9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7 칠레의 육류 수출 추이

연도	수출량 (톤)	그 중 일본수출 (톤)	수출액 (천달러, FOB가격)	그중 일본 수출 (천달러, FOB가격)
2001	68	-	410	-
2002	3,524	10	6,660	15
2003	6,443	1	15,245	10
2004	9,021	753	22,949	3,242
2005(속보치)	18,749	3,190	54,403	12,410

자료: ODEPA
주: 냉장, 냉동 및 가공육, 지육환산 베이스

수출량 증가 요인으로는 높은 위생 수준에 의해,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 크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정국으로, EU, 멕시코, 일본 등 위생 조건이 까다로운 나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칠레 식육처리가공시설협회(FAENACAR)에 의하면, 업계 전체에서 현재의 연간 수출량 약 2만 톤을 2010년에는 15만 톤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동 협회는 농업부, SAG 등 정부기관과 기업의 중개역을 담당하고 있으

며,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패커에 대해서는 인프라 정비나 제품의 품질 향상, 검사 공정 개선, 시장 개척 등을, 생산자에 대해서는 마켓에 따른 품종별·연령별 특화, 급여사료나 가축개량 등을 어드바이스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3년 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목표치 2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가가 비교적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생산량의 30~40%를 수출로 돌릴 수 있게 되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국별 쇠고기 수출량 비율,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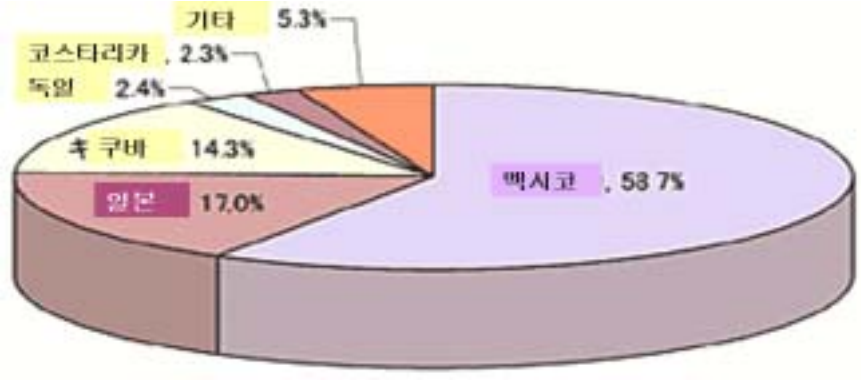

표 8 15년 후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관세 삭감율(%)

연도	96→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삭감율	0	17	33	50	67	83	100
관세율	6.0	4.98	4.02	3	1.98	1.02	0

2.1.2. 수입

거의 전량을 중남미연합(Mercosur)에서 수입하며, 그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2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에서 2005년 10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브라질 전 국토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여, 향후 반년~1년은 해금되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2005년 10월 이후는 지금까지 전수입양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산이 70%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브라질 수출 정비 분을 거의 커버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는 Mercosur 4개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6%에서 4.98%로 인하된다. 이는 1996년에 칠레가 Mercosur에 준가맹국으로 입회하였을 당시 협정에 근거한 조치이다. 쇠고기는 아래 표와 같이 민감품목으로 취급되어 10년간은 관세율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고, 11년째인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2011년에 무관세가 된다. 아울러 칠레는 이전에 Mercosur 각국에 관세 할당량을 주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6년까지, 우루과이는 2007년까지, 파라과이는 2009년까지 조치되도록 되어 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하지 않은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살리는 한편 관세인하를 활용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염가의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위생 조건의 엄한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에 자국산 쇠고기를 고가로 수출하는 방향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국별 쇠고기 수입량비율,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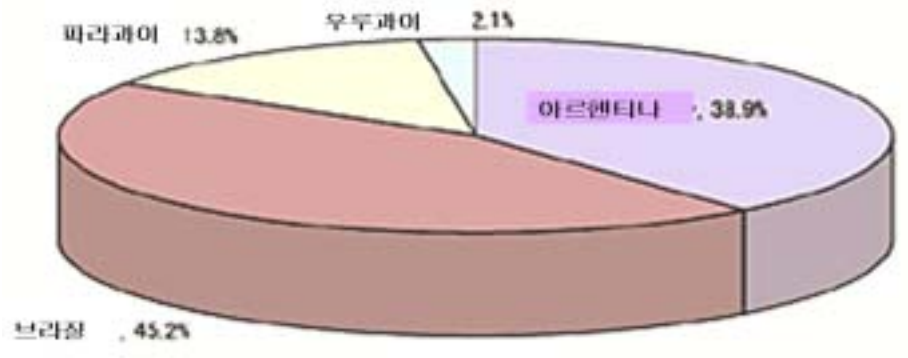

2.2. FTA

칠레에서는 FTA의 적극적인 추진(멕시코, 캐나다, EU, 미국,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맹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국 등)하여 확실한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확대에 중점을 둔 다각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FAENACAR에 의하면, 축산물 수출은 84개국이

넘으며, FTA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어도 각각의 시장의 요구에 맞춘 대응을 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향후 칠레의 수출확대에 빼 놓을 수 없는 시장으로써 아래 국가와의 쇠고기 관련 비준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미국

칠레와 미국은 2003년 6월에 FTA에 조인하고, 2004년 1월부터 발효했다. 칠레가 수출할 경우, 쇠고기에는 관세할당(2004년 1,000톤, 2005년 1,100톤, 2006년 1,210톤, 2007년 이후 관세 철폐)을 채용하고, 돼지고기는 무관세였지만 위생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FTA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5년 11월에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FSIS)으로부터 칠레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입 허가가 통보되어, 칠레측은 미국시장의 요구에 맞춘 도축시설의 인정 수속을 개시, 12월 23일에 Frigosor를 포함한 세 개의 시설이 인정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국이면서,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USDA의 전망에 의하면 2006년의 수입량이 168만 7천톤(지육 베이스) 정도 이다.

2.2.2. 한국

한국과의 FTA는 2003년 2월에 조인, 2004년 4월부터 발효했다. 관세 할당을 적용하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연 400톤(냉동 200톤, 냉장 200톤) 정도, 일정 수량을 넘는 관세의 취급은 도하개발계획(DDA) 종료 후에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2.2.3. 중국

2005년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석상에서, FTA가 조인되고, 중국으로서는 중남미 제국 중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

다. 향후 의회의 승인수속 등을 거쳐 발효하게 되지만, 칠레 수출품의 92%, 중국 수출품의 50%가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며, 기타 품목으로는 10년 이내에 무관세가 된다. 예외품목으로는 칠레 1%, 중국 3%의 품목 정도이다. 쇠고기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3.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3.1.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3.1.1. 제도의 도입

2001년에는 불과 30만 달러(약 3억 5,700만원)이었던 쇠고기 수출액은, 2003년 1억 5,000만 달러(약 178억 5,000만원), 2004년 2,300만 달러(약 273억 7,000만원), 2005년 5,400만 달러(약 624억 6,000만원, 속보값)에 이르며, 중기적으로는 연간 1억 달러(약 1,190억원) 수출이 전망되며, EU, 중동, 아시아시장 등이 새롭게 획득 가능한 개척지이다.

그러나, 이들 수입국이 원산국, 가축위생, 안전성 등의 각 증명을 수입조건으로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어, 2004년 11월 1일부터, 소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이 시동되었다. 이는 '소의 위생 트레이스어빌리티 공식 프로그램의 책정'에 관련되는 SAG 결의 제 3321호(2004년 9월 13일자)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선, 제 11주의 소 관련 축산시설부터 등록이 개시되었고, 기타 주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시스템은 이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소 관련 축산 시설의 등록
② 개체 식별 공식 장치(DIIO)의 등록
③ 가축의 이동 등록
④ 가축 수송 수단의 리스트

⑤ 축산정보 공식시스템(SIPEC)

3.1.2. 소 관련 축산시설의 등록

대상 시설의 구분은 이하와 같다. 이러한 시설은 SAG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SAG는 등록시설에 대해 모든 수속에 필요한 축산시설 등록부(RUP)에 게재된 시설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9자리수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아울러, ①~⑦ 이외의 시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각 시설의 소유자는 매년 7월에 6월 30일 현재의 사육두수를 신고한다.

① 공적 관리 하 가축시설(PABCO) 메뉴얼 규정에 맞는 PABCO의 A, B, C 각 시설(수출 발송국의 요건 중 하나를 선택)
② 산악방목을 하는 소 사육 시설
③ 국경 지역에 위치한 사육 시설
④ 송아지를 수입하는 사육 시설
⑤ 질병관리박멸 프로그램 참가시설 중 본 등록제도로 지정하는 사육 시설
⑥ 전시회장
⑦ 자가소비용 도축 또는 가축 처리시설

표 9 시설별 적용 범위

	시설등록 (RUP)	사양시설 신고	가축이동 위생서의 사용	DIIO의 장착의무
PABCO A	○	○	○	○
PABCO B	○	○	○	×
PABCO C	○	○	○	×
송아지를 수입하는 시설	○	○	○	○
질병관리 프로그램 참여시설	○	○	○	○
산악방목 실시 시설	○	○	○	○
국경지역 위치 시설	○	○	○	○
전시회장, 자가소비용 도축 또는 가축처리시설	○	×	○	×

그림 3 등록의 흐름

농장소유자가 등록양식에 기입하고 SAG에 신청 → SAG가 소 관련시설을 등록하고, RUP 번호와 등록증명서를 발급 → SAG는 이력을 축산정보 공식 시스템에 입력

3.1.3. 개체 식별 공식 장치(DIIO)의 등록

축산시설 등록부(RUP)에 등록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소가 귀표장착의 대상이 된다.

DIIO은 SAG에 인가된 제조업자가 SAG에서 준 개체식별용 9자리수 번호 등을 표시하여 제조한다.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해져 있으며, 왼쪽 귀에 귀표 타입을, 오른쪽 귀에 단추타입을 장착한다(오른쪽 귀에는 미소한 무선 IC장치도 이용 가능, 체내에 묻는 방식은 불가). 재사용은 할 수 없다.

그림 4 DIIO 의 이미지

DIIO는 생후 평일 20일 이내에 장착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방적인 대규모 목장의 경우에는 출하 전까지 장착을 전제로 이유까지 또는 6개월령 이내

에 장착하는 것도 인정된다. 수입소의 경우는 SAG에 개체 등록함과 동시에 검역기간 종료 후 즉시 DIIO를 장착하고, 이러한 수속이 종료되기 전에 농장 등에 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소를 수입한 시설은 RUP에 등록하고, 매년 사육두수의 신고와 3.1.4.의 가축이동위생서의 사용의무를 진다.

DIIO 1개당 가격은 2달러(2,380원) 전후로 구입비는 생산자 부담이다. DIIO 장착의무는 앞의 표와 같이 RUP에 등록한 모든 시설의 소가 아니다.

3.1.4. 가축의 이동 등록

소 관련 사육시설 간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가축이동위생서의 휴대가 필요하며, 위생서 없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생서는 복사식 3부이며, 그 중 사본 1부를 반출처 시설, 나머지 1부를 반입처 시설, 원본은 가축 반입처 시설로 이동 뒤, 평일 10일 이내에 반입처 소관의 SAG 사무소에 제출되어 보관된다. 반출처 및 반입처의 2부는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SAG 사무소에 원본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SIPEC에 그 정보가 입력된다.

3.1.5. 가축 수송수단 리스트

가축은 '가축 및 식육수송에 관련한 일반규정'(성령 240호/1993년)을 준수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시에는 SAG에 등록된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월초의 평일 10일 사이에 인정기관이 SAG에 지난 달의 동기간에 증명한 수송수단을 보고한다. 보고된 정보는 수송수단 소유자의 이름과 납세자 번호(RUT), 트럭의 등록번호, 증명서번호, 인정기관의 SAG 등록지명과 번호, 증명자 이름, 발행 연월일이다. 해당 증명서는 검사관이 요구하면 이에 응해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 이동 중 차량 내에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3.1.6. 축산정보 공식시스템(SIPEC)

SIPEC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의

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비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의 정보수집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⑴ 문서에 의한 것. SAG는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SIPEC에 해당 정보(소 관련시설 등록서, 가축 재고신고서, 소 개체식별서, 가축이동위생서, DIIO의 배포· 관리서 및 가축이송수단 리스트)를 입력한다.

⑵ 전자 서식에 의한 것. 홈 페이지상에서 입력한다.

⑶ 데이타베이스로 교신. SIPEC를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한다.

2005년 7월 첫 번째 사육두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6월 30일 현재로 11,735시설이 등록, 12만 0,082두에 DIIO가 장착되어, 137만 9,585두의 사육이 신고되었다.

표 10 각 레벨의 준수 내용

항목	A수준	B수준	C수준
축산시설등록부(RUP)의 기재	○	○	○
가축사육두수 신고	○	○	○
인정 수의사의 이용	○	○	-
SAG에 의한 관리 · 지도	○	○	○
동화작용물질 사용 않는다는 취지의 공증인 작성 서약서	○	-	-
등록시장에서 개체의 거래	○	○	○
든든한 목책, 둘레 및 경계선 설치	○	○	-
가축의 등록, 치료, 약제용 냉장시설 각 부분 설치	○	○	-
수출전 최저 3개월간 PABCO 시설에서 관리	-	○	○
출생부터 수출되기까지 동안 PABCO A시설에서 관리	○	-	-
DIIO 장착	○	-	-
동화작용물질 사용금지	○	-	-
가축배설물의 사료 사용 금지	○	-	-
가축이동력의 가축이동위생서의 휴대	○	○	○
약리학적 치료의 기록 보지	○	○	-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약리학적 치료	○	-	-

3.2. 공적 관리 하 가축시설(PABCO) 프로그램

SAG의 수출 증명 시스템은 농장 및 농축산물의 인증으로 구성된다. 농장인증의 경우 한 가지 수단이 PABCO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수출 발송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가축위생조건과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축 시설을 보증하는 것이다.

표 11 각국의 요구수준

국명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일본	멕시코	파나마	페루	에쿠아도르	홍콩	코스타리카	쿠바	볼리비아	이스라엘
	A	A	A	A	B	B	B	B	B	B	B	C	C	C	C

농장은 가축 또는 그 가공품 및 부산물의 수출 발송국 요건에 따라, PABCO의 A, B, C 수준의 어느 것 중 한 가지를 채용할 수 있다. PABCO의 모든 수준은 SAG의 현행규정 이행을 보증하는 공적 관리 하에 있으며, SAG는 수출 발송지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국가 리스트 및 농장이 속하여야 만하는 해당 PABCO 수준을 마련한다.

준수 내용은 농장의 시설설비, 가축의 취급, 기록의 보관유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임의였던 PABCO에 등록은 2006년 2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4. 맺음말

칠레는 2006년 1월 OIE로부터 BSE 청정국으로서 잠정 승인과정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 승인에 의해 칠레는 EU가 작년 8월에 실시한 리스크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잠정 청정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4 개국뿐이므로, 이번 OIE에 의한

평가가 정식으로 승인되면, 칠레의 위생조건이 세계적으로 보증되고 쇠고기 수출에 순풍이 될 것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위생상황의 강화를 배경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전개한 실적도 강점이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하지 않은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FTA를 배경으로 향후 수출확대는 확실시된다.

최대 수입처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의 인플레 대책의 하나로 쇠고기 국내가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내수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 등도 채택되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의한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 추가로 2월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의한 남위 42도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금지도 추가되었다.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려 자국산 쇠고기를 수출로 돌리려는 칠레의 예측대로 나아갈 것 인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자료 : http://lin.lin.go.jp/alic/month/fore/2006/mar/spe-02.htm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6년 5월 농업협상 동향
WTO, EU의 GMO 규제를 위법 판정

DDA, 2006년 5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한달에 한번 열리던 농업위원회 회의를 2주 간격으로 3번씩, 6월 중순까지 열겠다며 팰코너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 방식에 따라 5월 초부터 2주 간격으로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7월 말 이전에 최종 모델리티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에서는 DDA 협상과 다자주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과 팰코너 의장은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델리티 초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 WTO 농업위 논의 동향

5월 첫 주의 회의는 신규 가입국, 소규모 경제, 특별품목 그리고 민감품목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팰코너 의장은 민감품목을 제외한 세 개의 쟁점에 대한 참고문서를 배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특별품목에 대한 의장 참고문서는 G-33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였는데 G-33이 특별품목의 수를 전체 세번의 20%로 한데 대해 의장은 참고문서에서 어떤 국가에서는 전체 세번의 20%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20%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품목 논의와 관련하여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온두라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민감품목은 선진국을 위한 것이고 특별품목은 개도국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자 필리핀은 인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특별품목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민감품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면 특별품목의 수가 민감품목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이에 대해서는 G-33 내에서도 논의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떤 국가들은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수의 측면에서 연계시키고자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목적과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TRQ 증량기준이다. 의장은 각 협상 그룹들이 국내 소비량, TRQ 양허물량, 현행 수입량 등 기존의 입장에서 거의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여전히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TRQ 물량이 매우 적거나 매우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TRQ 물량이 매우 작아 증량폭도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경우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TRQ 물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TRQ를 큰 폭으로 증량할 필요는 없다는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5월 둘째 주는 의장이 제시한 식량원조, 수출국영기업, 수출신용에 관한 참고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금요일(12일)에는 의장이 민감품목 참고문서를 배포하여 이에 대한 각 국의 반응이 이어졌다.

의장은 각 그룹들이 제시한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이 실제로 어떤 수입확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시켜 가면서 타협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감품목 참고문서에서 의장은 일부 회원국들의 경우 전체 세번의 15%가 해당 국가의 농산물 수입액의 84~88%를 차지하고 있다며 15%가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을 암시하였고 수출국들이 주장한 전체 1% 역시 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5월 셋째 주는 주중에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이후 열대상품, 특혜문제에 관한 참고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다.

17일에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캐나다의 국내 보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캐나다의 시뮬레이션 결과 EU, 미국, 일본이 제시한 국내보조 감축안은 이들 세 국가의 실제 국내보조 감축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와 일본의 실제 보조지급실적이 현행 WTO 양허수준보다 낮고, 미국의 경우 무역왜곡보조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블루박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5월 15일에는 일반이사회가 열렸다. 라미 사무총장은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서가 작성되기 위해 각 국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각 국이 의장의 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각 국이 제안서를 제시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가정을 가지고 모의실험을 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월 넷째 주에는 파리에서 22~23일간 OECD 각료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제

네바에서는 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팰코너 의장은 블루박스, 그린박스, 무역왜곡보조총액, AMS 등 국내보조분야 쟁점별 참고문서를 작성・배포하였다.

OECD 각료회의에는 미국, EU를 비롯한 각 국의 통상장관들이 모였으며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DDA 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리 각료회의에서 EU는 시장접근분야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미국이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였다. 한편 라미 사무총장은 6월 10일 경에 의장초안을 제시하고 6월 말에는 각료회의를 열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5월 마지막 주는 의장의 참고문서를 토대로 국내보조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6월 초에 시장접근분야 참고문서를 배포하여 그 다음주에는 시장접근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팰코너 의장은 6월에 열릴 각료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에게 제시될 문서의 형태는 모델리티 초안에 괄호를 삽입하여 수치에 대해서 각료들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협상동향을 바탕으로 의장이 임의적 문서를 작성하여 각료들에게 제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회원국들이 의장의 참고문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 의장이 초안을 작성하면, 모델리티 초안은 6월 중순 이후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팰코너 의장 참고문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팰코너 의장은 쟁점별로 참고문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의장은 각 쟁점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정리・평가하

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여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참고문서는 지난 2005년 11월에 TNC에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의장으로서 논의를 정리하고 회원국들이 타협점 모색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1. 블루박스

팰코너 의장은 블루박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을 정리・평가하면서 블루박스의 상한을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로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기본골격 합의 이후의 중요한 진전사항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한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규율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품목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회원국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품목에 블루박스 보조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에는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기본골격 15항[1)]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역왜곡적 보조를 대폭 감축하고 이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쟁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블루박스의 잠재적 “신규 사용자”와 관련된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

---

1) 기본골격 15항은 다음과 같다.
"... In cases where a Member has placed an exceptionally large percentage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in the Blue Box, some flexibility will be provided on a basis to be agreed to ensure that such a Member is not called upon to make a wholly disproportionate cut."

였다. 의장은 신규 사용국이든 또는 신규 대상작물이든 블루박스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 필요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블루박스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추가적으로 블루박스를 더 활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만큼 AMS를 감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홍콩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면화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보다 빠른 속도로 감축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블루박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회원국들의 블루박스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보 절차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DDA 농업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감독 논의 결과를 블루박스의 통보에도 적용할지 아니면 블루박스를 위한 통보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민감품목

팰코너 의장은 지금까지 민감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1~15% 사이로 제시되었으며 그간 주요국간 의견차가 실질적으로 거의 좁혀지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룹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회원국들에게는 이 쟁점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다소 비난 섞인 평가를 내렸다.

이제는 협상 그룹들이 제시한 민감품목의 수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먼저 수입국들이 제시한 15%는 어떤 선진국의 경우 해당 세번의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88.1%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국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민감품목의 선정이 해당 국가의 농산물 수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수출국들이 제시한 1%에 대해 평가하면서 실품목을 기준으로 한 개만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더라도 전체 세번의 1%를 넘을 수 있다며 수출국들이

제시한 수치는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관세 감축과 TRQ 증량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단 관세 감축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반 관세 감축률의 25%에서 75% 수준 사이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는 회원국들이 제시한 입장과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으나 그간의 동향으로 볼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기본골격에서 "모든 민감품목에는 어느 정도의 TRQ 증량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회원국간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골격의 문구를 모든 민감품목에 최소한의 TRQ 증량 뿐만 아니라 일반 관세 감축폭과의 일탈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증량해야 한다라고 해석한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일반 관세 감축률과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의 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일반 품목이 되었을 때 수입될 수 있는 물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TRQ를 증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의장은 TRQ 증량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현행 국내 소비량, TRQ 양허물량, 현행 수입량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각 증량 기준에 대한 그룹별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내 소비량은 UR 협상에서도 적용되었던 기준으로서 국내 소비량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내 소비량이야 말로 위임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소비량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추가** 증량'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은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까지** 증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내 소비량을 거부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할 경우 일반 관세 감축폭보다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데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물량보다 높은 수준의 증량폭이 계산되고 관세 세번별로 수입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소비량에 반대하고 있다.

TRQ 양허물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이 경우 국내 소비량 자료 획득 및 계산의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UR 협상에서 결정된 TRQ 물량은 국내 소비량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어서 현행 TRQ 물량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소비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UR 협상 당시 기준 기간이었던 1986~1988년도는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수입물량을 증량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는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일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TRQ 증량폭은 일반 관세 감축률을 적용했을 때 수입되는 물량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RQ 증량 공식은 현행 수입량과 수입 수요 탄성치 그리고 보상의 수준으로 된 함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식에서 쓰이는 탄성치는 1이 될 것이며, 보상의 수준은 100%보다 작은 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현행 수입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TRQ 관리 방식이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TRQ 양허물량보다 수입량이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수입량이 진정한 국내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 수요 탄성치 또한 1 이상인 경우가 많다며 현행 수입량을 적용하는데 반대하였다.

그러자 현행 수입량을 제시하였던 국가는 수입량이 매우 적은 경우 TRQ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세 가지 증량 기준에 대한 각 국의 입장에 대해 정리하고 TRQ 증량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의견차가 크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다행히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 가지 증량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제는 각 그룹들이 제시한 수치를 놓고, 타협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 그룹들이 제시한 TRQ 증량폭의 차이는 10:1 수준인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WTO, EU의 GMO 규제를 위법 판정

김 상 현*

2006년 5월 WTO 분쟁 패널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제소한 EU의 새로운 생명공학식품(Biotech Product) 승인에 대해 잠정 중지조치(moratorium)가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개관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EU의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의 승인에 대한 잠정 중지조치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이 취한 유통 및 수입 금지 조치(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EU는 1998년 이후 상업용 GMO 신청에 대한 신규 승인심사를 잠정 중단했는데, 이는 다수 가맹국이 표시제(labelling)와 농산물이력축적관리제(traceability)의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기에 앞서 신규 심사절차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2004년 4월 해당 규정들이 채택되어 발효된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다수의 GMO를 승인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2. 사실관계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해택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경 위해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GMO와 전통적인 식품 사이에는 고유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미국은 도덕적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유럽이 취한 관련 조치가 생명공학식품의 수출을 막는 동시에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파생된 종자의 수입과 재배를 저해함으로써 개도국의 농업과 경제 성장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생명공학식품의 잠재 위해성뿐만 아니라 GMO와 전통식품 간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무역통계 분석에 따르면, EU의 역내 정책이 대 EU 개도국 수출을 제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쟁점조치

이런 광범위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법적 주장은 주로 절차상의 문제에 있었다. 제소국(complainant)은 주로 ① EU의 승인절차에 대한 잠정 중지조치(moratorium), ② 특정 품목에 대한 잠정 중지조치, ③ 가맹국의 유통 및 수입 금지 관련 내국민조치(National Measures) 등에 초점을 맞췄다.

EU는 이런 잠정 중지조치를 부인하면서, 미국에게 명시적으로 해당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이의를 제기했다.

내국민조치와 관련하여 EU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WTO의 SPS 협정의 예방적 조치를 참고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 조치가 허용된다.

4. 관련 법적 근거

미국은 내국민조치와 관련된 1994년 GATT 규정과 함께 WTO SPS 협정을 근거로 제소하면서, 잠정 중지조치와 내국민조치가 SPS 협정에 준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EU 가맹국의 국내 법안의 목적이 인건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포괄적인 주장을 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와 내국민조치가 SPS 협정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1994년 GATT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잠재 위해성을 내포하는 GMO에 대한 SPS 협정의 적절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SPS 협정과 1994년 GATT가 언급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TBT 협정의 환경 및 관련 목적에 대한 규정을 언급했다.

EU는 WTO 협정 이외에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에 반영된 사전 예방원칙과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을 포함하여 의정서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4.1. 동종식품(Like Product)

미국과 달리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GMO가 본질적으로 전통식품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EU가 동종식품을 차별화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금지조치와 내국민조치로 인해서 생명공학식품이 GMO가 아닌 수입식품이나 전통적인 국내식품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국은 동종성(Like)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 및 식습관, 관세분류 등 4가지 일반 기준에서 GMO 식품이 일반 식품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양국의 주장에 대해서 전통식품 이외에 특정 식품은 모두 승인절차 대상이여야 하며, 국제사회도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에 의거 GMO 식품에 대한 고유한 승인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2. 위해성 및 예방조치

제소국들은 잠정 중지조치와 내국민조치가 SPS 협정의 부속서 A(Annex A)에 규정된 위해성 평가와 과학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해당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취해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를 참고한 EU에 대해 미국은 의정서를 이행하다고 해서 다른 국제 의무이행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는 예방조치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의정서 규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WTO 규정의 의미와 효과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5. 법정의견서

분쟁에 관심이 있는 이해 당사국들은 패널이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해 당사국 가운데, CIEL, FOE-US, Defenders of Wildlife, IATP, OCA-USA 등 5개 민간단체의 그룹은 GMO의 위해성을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런 불확실성은 너무 본질적인 문제여서 GMO의 위해성

을 적절히 고려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에 따라 SPS 협성 제5조 7항과 국제법의 관련 규정 및 원칙에 준해서 사전 예방적인 의사결정을 취해야 한다.

15개 공익단체로 구성된 공익법정대리연합(Public Interest Amicus Coalition, PIAC)은 사실상의 잠정 중지조치가 WTO 규정 대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향의 표명이라는 EU의 주장을 지지했다. PIAC는 패널이 잠정 중지조치와 내국민조치가 WTO 협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평결했을지라도, 관련 조치들이 사전 예방 원칙과 동등성, 투명성, 공정성에 입각한 국제 위해성 평가 기준을 근거로 취해졌다며 제소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부 학술단체는 과학, 위해성 평가, 사전예방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의 고유한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해성 평가가 단일 개념이 아니라 전후관계와 의사결정 문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했다.

6. 패널 평결

패널은 2006년 2월 미국 등 3국의 제소 건에 대한 잠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통해서 프랑스 등 6개국이 GMO 식품에 대해 부과한 EU의 일반적인 잠정 중지조치와 세이프가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패널은 GMO 식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한지, 동종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승인절차 및 해당 조치에 관한 EU의 규정이 WTO 규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패널은 잠정 중지조치가 1999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발효되었지만, 해당 조치 자체가 SPS 협정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평결했다. 대신 잠정 중지조치는 SPS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즉 EU가 적용한 승인절차)에서 부적절한 지연을 초래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EU는 SPS 협정의 부속서 C와 제

8조의 WTO 의무이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패널은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는 승인절차의 잠정 중지에 따라 24~27개에 달하는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승인이 부적절하게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등 6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패널은 EU 과학위원회가 해당 식품의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 위해성과 관련 가맹국이 제시한 주장을 이미 평가한 바 있다고 잠정 평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국들은 SPS 협정의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학적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채택하도록 허용한 SPS 협정의 제5조 7항의 요건에 위배된다고 평결했다. 더욱이 패널은 해당 가맹국이 어떤 위해성 평가도 수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SPS 협정의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평결했다.

또한 패널은 2004년에 해당 생명공학식품의 승인과 함께 잠정 중지조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EU에게 어떤 권고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품목특정 조치와 관련하여, 패널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EC에게 WTO SPS 협상에 일치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고 권고한 바 있다.

3개월 뒤인 2006년 5월 10일 패널은 1999년 7월~2003년 8월 동안 시행된 EU의 새로운 생명공학식품 승인에 대해 잠정 중지조치가 WTO 위생 및 검역 조치에 위배된다고 최종 평결했다. 이번 발표된 최종보고서에는 큰 변화 없이 지난 잠정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또한 프랑스 등 6개국이 유통 및 수입 금지를 위해서 취한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평결했

다. 패널에 따르면, EU의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해당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이미 판결했으며, 해당 국가들도 관련 조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 : http://www.ictsd.org/biores/06-05-19/inbrief.htm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5)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5)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5)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5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6/07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19억 8,187만 톤, 소비량은 1.0% 증가한 20억 4,299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6% 감소한 3억 2,086만 톤, 기말재고율은 3.2% 포인트 감소한 15.7%로 전망하고 있다.

1. 전체 곡물

2006/07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9억 8,1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전망치보다 1,802만 톤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6/07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8,198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6,385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20억 4,29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고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02-3299-4269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6/07년도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2억 3,9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6,11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6/07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3억 2,08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5/06년도 18.9%에서 15.7%로 3.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변동률(%)
			2006.5	전년대비
생 산 량	2,046.30	1,999.89	1,981.87	△0.9
공 급 량	2,405.19	2,404.28	2,363.85	△1.7
소 비 량	2,000.81	2,022.31	2,042.99	1.0
교 역 량	240.33	240.77	239.20	△0.7
기말재고량	404.39	381.98	320.86	△16.0
기말재고율	20.2	18.9	15.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2. 쌀

2006/07년도 쌀 생산량은 2005/06년 보다 1.3% 증가한 4억 1,701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식부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쌀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6/07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억 2,315만 톤으로 지난해 보다 약 506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2,77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 베트남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1%와 10%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곡물년도인 2006/07년에는 공급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6,19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보다 614만 톤 감소한 수준으로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1882/8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6/07년도 기말재고율은 14.6%로 2005/06년도의 16.3%보다 약 1.7%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74/75년 이후 최저 비율이다. 특히 미국의 재고량은 78만 톤으로 지난해 보다 28.4%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1998/99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변동률(%)
			2006.5	전년대비
생 산 량	402.69	411.52	417.01	1.3
공 급 량	488.86	486.19	485.10	△0.2
소 비 량	414.18	418.09	423.15	1.2
교 역 량	28.04	27.90	27.78	△0.4
기말재고량	74.67	68.09	61.95	△9.0
기말재고율	18.0	16.3	14.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3. 소맥

2006/07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47만 톤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6/07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5/06년 6억 2,696만 톤보다 약 1,089만 톤 감소한 6억 1,60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1,4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억 866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유럽은 자국의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이고, 인도는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6/07년 기말재고량은 1억 2,813만 톤으로 전년보다 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5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18.3%와 15% 감소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의 22.9%에서 20.8%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2006.5	변동률(%) 전년대비
생 산 량	628.76	620.36	600.47	△3.2
공 급 량	760.63	770.69	744.20	△3.4
소 비 량	610.30	626.96	616.07	△1.7
교 역 량	110.84	112.28	108.66	△3.2
기말재고량	150.33	143.73	128.13	△10.9
기말재고율	24.6	22.9	2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4. 옥수수

2006/07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8,028만 톤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7억 1,73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2,695만 톤 정도 초과하였다. 2006/07년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2006/07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7,799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0%, 14.7%로 이들 두 국가가 8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8.7% 감소한 9,22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3,705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지난 20년 중 최저치다. 2006/07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5.9% 포인트 감소한 12.9%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2006.5	변동률(%) 전년대비
생 산 량	712.30	686.47	680.28	△0.9
공 급 량	816.67	817.79	809.59	△1.0
소 비 량	685.35	688.48	717.33	4.2
교 역 량	78.00	73.51	77.99	6.1
기말재고량	131.32	129.31	92.26	△28.7
기말재고율	19.2	18.8	12.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5. 대두 및 대두박

2005/06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180만 톤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제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의 주요 대두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생산량이 미국의 감소분을 상쇄시켰다. 2006년 2월 전망까지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을 보였으나 3월 전망부터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 전망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6,63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9.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6.9%, 브라질이 39.2%, 아르헨티나가 15.8%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59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773만 톤과 비교하여 1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3.0% 포인트 높은 26.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6.4	2006.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6.75	215.58	222.26	221.80	2.9	△0.2
공 급 량	229.18	253.17	267.83	269.53	6.5	0.6
소 비 량	190.03	205.27	213.75	212.57	3.6	△0.6
교 역 량	55.84	64.79	65.77	66.38	2.5	0.9
기말재고량	37.59	47.73	53.75	55.94	17.2	4.1
기말재고율	19.8	23.3	25.1	26.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2005/06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327만 톤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난 1억 4,3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1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4,8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27.1%, 아르헨티나가 46.1%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600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61만 톤과 비교하여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4.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6.4	2006.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28.40	138.35	144.08	143.27	3.6	△0.6
공 급 량	134.19	144.01	149.71	149.88	4.1	0.1
소 비 량	127.92	136.55	143.78	143.41	5.0	△0.3
교 역 량	45.26	46.52	48.38	48.75	4.8	0.8
기말재고량	5.66	6.61	5.52	6.00	△9.2	8.7
기말재고율	4.4	4.8	3.8	4.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변동률(%)
			2006.5	전년대비
공급량	488.86	486.19	485.10	△0.2
기초재고량	86.17	74.67	68.09	△8.8
생산량	402.69	411.52	417.01	1.3
미국	7.46	7.09	6.51	△8.2
태국	17.36	18.00	18.35	1.9
베트남	22.72	22.56	23.00	2.0
인도네시아	34.83	34.96	35.09	0.4
중국	125.36	127.40	129.00	1.3
일본	7.94	8.26	7.94	△3.9
수입량	26.35	26.21	26.06	△0.6
인도네시아	0.50	0.60	0.60	0.0
중국	0.61	0.60	0.80	33.3
일본	0.78	0.70	0.65	△7.1
소비량	414.18	418.09	423.15	1.2
미국	3.93	4.04	4.12	2.0
태국	9.48	9.50	9.57	0.7
베트남	18.00	18.25	18.50	1.4
인도네시아	35.85	35.60	35.65	0.1
중국	135.10	135.20	135.30	0.1
일본	8.30	8.25	8.20	△0.6
수출량	28.04	27.90	27.78	△0.4
미국	3.50	3.68	3.27	△11.1
태국	7.27	7.30	8.25	13.0
베트남	5.17	5.20	4.70	△9.6
기말재고량	74.67	68.09	61.95	△9.0
미국	1.21	1.09	0.78	△28.4
태국	2.31	3.56	4.19	17.7
인도네시아	3.45	3.41	3.45	1.2
중국	35.14	27.14	20.84	△23.2
일본	1.92	2.43	2.62	7.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변동률(%)
			2006.5	전년대비
공급량	760.63	770.69	744.20	△3.4
기초재고량	131.87	150.33	143.73	△4.4
생산량	628.76	620.36	600.47	△3.2
미국	58.74	57.28	50.97	△11.0
호주	22.60	24.50	24.00	△2.0
캐나다	25.86	26.80	26.00	△3.0
EU25	136.77	122.59	125.50	2.4
중국	91.95	97.00	97.50	0.5
러시아	45.40	47.70	42.00	△11.9
수입량	109.86	107.71	107.83	0.1
EU25	7.39	7.50	6.30	△16.0
브라질	5.21	6.20	6.20	0.0
북아프리카	18.41	18.60	16.10	△13.4
파키스탄	1.42	0.80	0.60	△25.0
인도	0.01	0.20	4.50	2150.0
러시아	1.20	0.80	1.20	50.0
소비량	610.30	626.96	616.07	△1.7
미국	31.91	32.06	31.79	△0.8
EU25	115.20	119.50	118.50	△0.8
중국	102.00	101.00	100.00	△1.0
파키스탄	20.00	21.50	22.00	2.3
러시아	37.40	38.40	37.40	△2.6
수출량	110.84	112.28	108.66	△3.2
미국	28.92	27.22	24.49	△10.0
캐나다	14.97	16.00	18.00	12.5
EU25	14.37	14.50	16.50	13.8
기말재고량	150.33	143.73	128.13	△10.9
미국	14.70	14.88	12.16	△18.3
EU25	25.20	21.29	18.09	△15.0
중국	38.82	35.02	33.02	△5.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4/05	2005/06 (추정)	2006/07(전망) 2006.5	변동률(%) 전년대비
공급량	816.67	817.79	809.59	△1.0
기초재고량	104.37	131.32	129.31	△1.5
생산량	712.30	686.47	680.28	△0.9
미국	299.91	282.26	267.98	△5.1
아르헨티나	20.50	14.00	17.50	25.0
EU25	53.48	48.32	50.00	3.5
멕시코	22.05	19.20	21.30	10.9
동남아시아	16.53	16.58	17.33	4.5
중국	130.29	134.00	135.00	0.7
수입량	76.88	74.88	76.36	2.0
EU25	2.95	3.00	2.50	△16.7
일본	16.49	16.50	16.20	△1.8
멕시코	5.92	7.50	7.50	0.0
동남아시아	3.23	3.56	3.15	△11.5
한국	8.64	8.40	8.70	3.6
소비량	685.35	688.48	717.33	4.2
미국	224.75	228.23	241.18	5.7
EU25	51.70	48.50	49.80	2.7
일본	16.70	16.60	16.50	△0.6
멕시코	27.90	28.40	28.80	1.4
동남아시아	19.20	19.95	20.55	3.0
한국	8.67	8.50	8.80	3.5
중국	131.00	133.00	137.00	3.0
수출량	78.00	73.51	77.99	6.1
미국	46.08	51.44	54.61	6.2
아르헨티나	14.57	9.00	11.50	27.8
중국	7.59	5.00	4.00	△20.0
기말재고량	131.32	129.31	92.26	△28.7
미국	53.70	56.54	28.98	△48.7
아르헨티나	0.96	0.56	0.46	△17.9
EU25	7.75	10.26	11.96	16.6
중국	36.56	32.58	26.68	△1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6.4	2006.5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9.18	253.17	267.83	269.53	6.5	0.6
기초재고량	42.43	37.59	45.57	47.73	27.0	4.7
생산량	186.75	215.58	222.26	221.80	2.9	△0.2
미국	66.78	85.01	84.00	84.00	△1.2	0.0
아르헨티나	33.00	39.00	40.50	40.50	3.8	0.0
브라질	51.00	53.00	57.00	56.50	6.6	△0.9
중국	15.39	17.40	18.30	18.30	5.2	0.0
수입량	54.28	64.61	65.44	65.36	1.2	△0.1
EU25	14.64	15.50	14.40	14.80	△4.5	2.8
일본	4.69	4.30	4.10	4.10	△4.7	0.0
중국	16.93	25.80	27.00	27.00	4.7	0.0
소비량	190.03	205.27	213.75	212.57	3.6	△0.6
미국	44.60	51.25	51.21	51.21	△0.1	0.0
아르헨티나	26.50	28.84	30.42	30.82	6.9	1.3
브라질	32.11	31.86	32.36	31.14	△2.3	△3.8
EU25	15.44	15.89	15.19	15.49	△2.5	2.0
일본	4.93	4.50	4.29	4.29	△4.7	0.0
중국	34.38	40.21	45.10	45.10	12.2	0.0
수출량	55.84	64.79	65.77	66.38	2.5	0.9
미국	24.13	30.01	24.49	24.49	△18.4	0.0
아르헨티나	6.93	9.31	10.45	10.50	12.8	0.5
브라질	19.82	20.14	25.53	25.99	29.0	1.8
기말재고량	37.59	47.73	53.75	55.94	17.2	4.1
미국	3.06	6.96	15.37	15.37	120.8	0.0
아르헨티나	14.70	16.24	14.45	16.22	△0.1	12.2
브라질	15.40	16.93	16.42	16.73	△1.2	1.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추정)	2005/06(전망)		변동률(%)	
			2006.4	2006.5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4.19	144.01	149.71	149.88	4.1	0.1
기초재고량	5.79	5.66	5.63	6.61	16.8	17.4
생산량	128.40	138.35	144.08	143.27	3.6	△0.6
미국	32.95	36.94	36.84	36.75	△0.5	△0.2
아르헨티나	19.69	21.53	22.61	22.87	6.2	1.1
브라질	22.36	22.42	23.39	22.21	△0.9	△5.0
EU25	10.95	11.09	10.55	10.75	△3.1	1.9
중국	20.19	24.03	27.38	27.38	13.9	0.0
수입량	44.65	45.68	47.97	48.28	5.7	0.6
미국	0.26	0.13	0.15	0.15	15.4	0.0
브라질	0.23	0.19	0.19	0.19	0.0	0.0
EU25	21.91	22.10	22.50	22.50	1.8	0.0
소비량	127.92	136.55	143.78	143.41	5.0	△0.3
미국	28.53	30.45	30.62	30.53	0.3	△0.3
브라질	7.70	8.70	9.13	9.13	4.9	0.0
인도	1.12	1.29	1.57	1.40	8.5	△10.8
EU25	32.49	32.68	32.50	32.65	△0.1	0.5
중국	19.54	23.46	27.33	27.53	17.3	0.7
수출량	45.26	46.52	48.38	48.75	4.8	0.8
미국	4.69	6.66	6.31	6.31	△5.3	0.0
아르헨티나	18.74	20.50	21.65	22.46	9.6	3.7
브라질	14.76	14.24	14.19	13.21	△7.2	△6.9
기말재고량	5.66	6.61	5.52	6.00	△9.2	8.7
미국	0.19	0.16	0.23	0.23	43.8	0.0
아르헨티나	1.43	1.97	1.21	1.84	△6.6	52.1
브라질	1.78	1.45	1.70	1.51	4.1	△11.2
EU25	0.85	0.86	0.86	0.86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4, May 12, 2006.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630	240,520	200,081	24,033	40,439	20.2
2005/06(E)	199,990	240,428	202,231	24,077	38,198	18.9
2006/07(P)	198,187	236,385	204,299	23,920	32,086	15.7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주 : (1) E(추정치), P(전망치),

(2)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3) 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5)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5월 15일 발표한 쌀 가격전망에 의하면, 5월 현재 세계 쌀 가격은 태국산 장립종이 전년대비 11.9% 상승한 톤당 311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이 전년대비 20.0% 상승한 톤당 485달러이다.

또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6년 7월물 5월(16일 현재) 소맥가격은 전년대비 41.8% 상승한 톤당 178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6년 7월물 5월(16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22.3% 상승한 톤당 102달러, 2006년 7월물 5월(16일 현재) 대두 가격은 전년대비 1.3% 상승한 톤당 221달러이다.

1. 쌀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대비 11.9% 상승한 톤당 31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월보다 1.0% 상승한 수준이다.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은 태국의 통화 바트의 강세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가 여전히 수백만 톤의 쌀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쌀 가격은 동일 품질의 아시아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시장 경쟁력은 떨어진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02-3299-4269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하락한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전년대비 20.0%, 전년 동월대비 22.2% 상승한 톤당 485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가격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2006/07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수입량이 증가될 전망을 보이면서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중국 북경신발지 도매시장 중립종 가격은 2006년 5월(15일) 톤당 387달러로 전월보다 3.5%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 1 월별 쌀 가격 동향, 2001년 1월~200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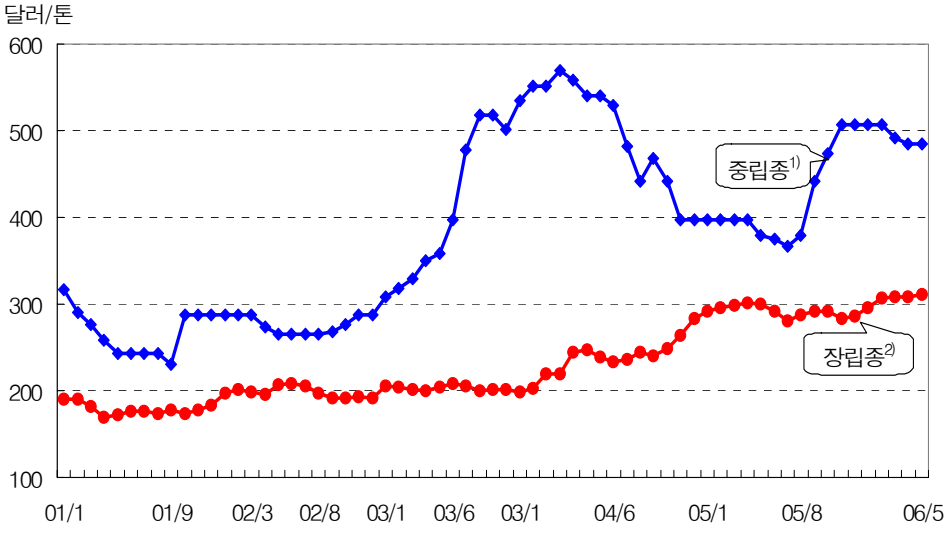

자료 : USDA, Rice Outlook.
주 :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품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2. 소맥

2004/05년 국제 소맥가격은 톤당 126달러로 전년보다 약 7.4%하락하였다. 2004년 상반기 상승하던 가격은 국제 소맥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하락하였다. 2005년 3월까지 약 상승하던 가격은 4월에서 6월까지 톤당 120달러를 유지하였다.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던 소맥 가격은 10월에 톤당 13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6년 5월(16일 현재) 톤당 178달러로 전년대비 41.8% 상승하고 전년 동월대비 50.4% 상승한 수준이다. 2006/07년 미국 소맥 주산지들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향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2 월별 소맥·옥수수·대두가격 동향, 2001년 1월~200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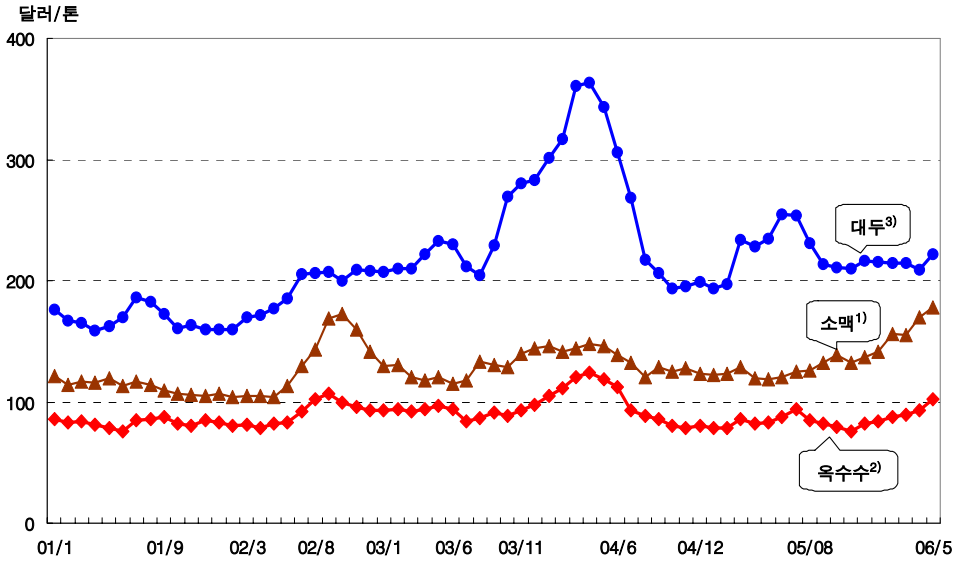

자료 :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주 : (1)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3. 옥수수

2004/05년 옥수수 가격은 톤당 83달러로 전년보다 약 20.0% 하락하였다. 2004년 4월은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옥수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했다. 2004/05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2004년 11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8월부터 생산량이 다소 증가할 전망을 보여서 11월 톤당 76달러까지 하락했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한 옥수수 가격은 2006년 5월(16일 현재) 톤당 102달러로 전년대비 22.3%, 전월대비 9.4% 상승하였다. 미국의 옥수수재배면적 감소로 2006/07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옥수수 수출국인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두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다. 2004/05년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고,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4년 4월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5월부터 하락하여 11월에는 톤당 196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6년 5월(16일 현재) 대두 가격은 톤당 221달러로 전년대비 1.3% 상승하였다. 주요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의 다습한 기후로 인한 작물 재해로 대두 생산량이 연초의 전망치보다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환율 강세로 인한 브라질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생산자들의 판매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가격 동향, 2006년 5월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3/04	2004/05	2005.5	2006.4	2006.5(P)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태국[1]	220	278	300	308	311	11.9	3.7	1.0
쌀 캘리포니아[1]	533	404	397	485	485	20.0	22.2	0.0
중국(북경)[2]	-	-	-	374	387	-	-	3.5
소 맥[3]	136	126	119	170	178	41.8	50.4	5.1
옥 수 수[4]	104	83	83	93	102	22.3	22.2	9.4
대 두[4]	295	219	234	209	221	1.3	△5.5	6.0

주 : (1)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품, USDA, Rice Outlook.
(2) 북경신발지(北京新发地) 도매시장가격, 자포니카,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中國人民共和國農業部)자료를 달러(한국은행(http://ecos.bok.or.kr) 일일환율(위엔/달러) 적용)로 환산. 2006년 5월 가격은 15일 도매시장가격.
(3)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6년 5월 가격은 16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6년 5월 가격은 16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표 2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1]	쌀				소맥[3]	옥수수[4]	대두[4]
	미국[2]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4	278	278	126	83	219

자료 : USDA ERS

주 :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품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 (1)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2)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3)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4) **http://www.agri.gov.cn/jghq/ly/**

통계자료

대륙별 곡물 통계

표 1 세계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99,333	823,658	71,289	1,094,280	75,816	815,354	203,110
1961/62	203,329	799,608	82,999	1,085,936	87,155	816,802	181,979
1962/63	181,979	850,519	81,225	1,113,723	86,138	837,790	189,795
1963/64	189,795	857,805	99,593	1,147,193	102,407	852,140	192,646
1964/65	192,646	906,245	91,313	1,190,204	100,606	895,825	193,773
1965/66	193,773	904,684	109,001	1,207,458	116,255	932,062	159,141
1966/67	159,141	988,536	108,218	1,255,895	109,825	956,596	189,474
1967/68	189,474	1,014,294	102,085	1,305,853	104,930	987,607	213,316
1968/69	213,316	1,052,526	96,221	1,362,063	98,339	1,020,053	243,671
1969/70	243,671	1,063,188	101,636	1,408,495	111,927	1,068,787	227,781
1970/71	227,781	1,078,784	113,573	1,420,138	119,226	1,108,029	192,883
1971/72	192,883	1,177,330	120,014	1,490,227	122,656	1,150,046	217,525
1972/73	217,527	1,140,666	133,317	1,491,510	137,556	1,173,677	180,277
1973/74	180,277	1,253,008	131,688	1,564,973	143,329	1,229,864	191,780
1974/75	191,780	1,203,544	123,703	1,519,027	129,584	1,190,510	198,933
1975/76	198,933	1,236,816	147,577	1,583,326	152,283	1,212,115	218,928
1976/77	218,929	1,342,207	145,470	1,706,606	153,442	1,273,217	279,947
1977/78	279,949	1,319,517	159,011	1,758,477	160,544	1,319,955	277,978
1978/79	277,978	1,445,499	166,705	1,890,182	176,739	1,380,421	333,022
1979/80	333,015	1,409,938	195,275	1,938,228	194,098	1,416,397	327,733
1980/81	329,040	1,429,337	201,503	1,959,880	211,993	1,440,033	307,854
1981/82	309,930	1,490,584	211,471	2,011,985	214,116	1,463,740	334,129
1982/83	334,528	1,541,256	196,265	2,072,049	200,336	1,480,474	391,239
1983/84	391,476	1,509,144	199,660	2,100,280	211,778	1,538,547	349,955
1984/85	348,860	1,670,663	214,923	2,234,446	218,154	1,587,562	428,730
1985/86	428,155	1,682,840	175,724	2,286,719	179,118	1,588,599	519,002
1986/87	519,006	1,703,891	182,225	2,405,122	191,398	1,640,169	573,555
1987/88	571,416	1,642,007	213,769	2,427,192	218,007	1,680,130	529,055
1988/89	530,596	1,590,076	217,111	2,337,783	227,094	1,659,095	451,594
1989/90	451,625	1,708,150	217,697	2,377,472	226,581	1,709,341	441,550
1990/91	442,599	1,810,092	204,375	2,457,066	217,222	1,743,219	496,625
1991/92	495,672	1,723,854	215,657	2,435,183	226,706	1,719,738	488,739
1992/93	485,850	1,796,398	209,973	2,492,221	226,493	1,742,251	523,477
1993/94	523,339	1,719,723	200,416	2,443,478	213,741	1,744,216	485,521
1994/95	483,228	1,761,099	213,562	2,457,889	216,375	1,763,341	478,173
1995/96	478,173	1,712,249	204,266	2,394,688	217,138	1,740,279	437,271
1996/97	435,471	1,872,541	206,354	2,514,366	219,512	1,808,150	486,704
1997/98	486,704	1,878,166	213,625	2,578,495	217,239	1,820,341	540,915
1998/99	540,915	1,875,553	218,950	2,635,418	220,721	1,834,130	580,567
1999/00	580,067	1,872,172	232,599	2,684,838	244,186	1,853,329	587,323
2000/01	587,323	1,842,761	227,218	2,657,302	233,553	1,856,925	566,824
2001/02	566,792	1,874,113	235,987	2,676,892	239,509	1,898,706	538,677
2002/03	538,677	1,820,852	237,542	2,597,071	241,364	1,909,105	446,602
2003/04	446,602	1,862,190	228,008	2,536,800	240,429	1,937,474	358,897
2004/05	358,897	2,046,298	237,106	2,642,301	240,330	1,997,582	404,389
2005/06	404,389	1,999,895	233,757	2,638,041	240,773	2,015,290	381,978
2006/07(P)	381,978	1,981,871	234,633	2,598,482	239,202	2,038,418	320,862

표 2 동아시아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21,742	114,727	9,183	145,652	668	133,184	11,800
1961/62	11,800	116,773	13,536	142,109	897	124,506	16,706
1962/63	16,706	124,408	13,479	154,593	1,038	131,014	22,541
1963/64	22,541	131,964	17,104	171,609	1,342	145,781	24,486
1964/65	24,486	146,523	16,770	187,779	1,782	165,326	20,671
1965/66	20,671	154,760	18,123	193,554	2,333	171,031	20,190
1966/67	20,190	167,161	19,447	206,798	2,210	179,851	24,737
1967/68	24,737	173,030	19,364	217,131	1,742	183,823	31,566
1968/69	31,566	166,179	20,564	218,309	1,825	182,237	34,247
1969/70	34,247	167,402	23,583	225,232	2,068	187,386	35,778
1970/71	35,778	185,946	24,257	245,981	2,429	201,160	42,392
1971/72	42,392	194,973	24,992	262,357	2,295	212,928	47,134
1972/73	47,134	190,347	30,899	268,380	3,720	214,406	50,254
1973/74	50,254	204,291	34,094	288,639	3,035	230,115	55,489
1974/75	55,489	218,604	30,880	304,973	2,583	233,877	68,513
1975/76	68,513	228,633	28,538	325,684	1,673	244,595	79,416
1976/77	79,416	229,952	32,220	341,588	1,886	252,873	86,829
1977/78	86,829	225,833	39,550	352,212	2,666	261,360	88,186
1978/79	88,186	252,110	45,427	385,723	2,445	269,573	113,705
1979/80	113,705	268,165	45,192	427,062	2,740	294,987	129,335
1980/81	129,268	254,711	51,889	435,868	2,204	312,306	121,358
1981/82	121,403	261,040	50,309	432,752	1,420	320,591	110,741
1982/83	110,741	285,328	52,761	448,830	1,554	324,909	122,367
1983/84	122,367	317,523	48,783	488,673	2,653	338,509	147,511
1984/85	147,511	337,051	47,207	531,769	7,314	349,949	174,506
1985/86	174,496	314,849	48,196	537,541	8,580	354,828	174,133
1986/87	174,133	328,432	54,633	557,198	7,154	362,209	187,835
1987/88	187,835	334,172	61,414	583,421	6,887	371,129	205,405
1988/89	205,405	326,263	59,498	591,166	6,983	376,940	207,243
1989/90	207,243	338,027	57,384	602,654	5,171	381,500	215,983
1990/91	215,983	370,885	56,537	643,405	9,456	393,177	240,772
1991/92	240,772	359,361	64,136	664,269	12,116	400,163	251,990
1992/93	251,990	363,913	54,992	670,895	14,194	404,569	252,132
1993/94	252,132	367,229	56,472	675,833	14,614	413,299	247,920
1994/95	247,920	359,953	68,228	676,101	3,360	419,993	252,748
1995/96	252,748	377,497	64,422	694,667	1,946	421,106	271,615
1996/97	271,615	409,500	53,975	735,090	6,554	428,311	300,225
1997/98	300,225	399,070	51,211	750,506	12,257	429,101	309,148
1998/99	309,148	411,530	51,498	772,176	7,414	436,583	328,179
1999/00	328,179	409,932	52,198	790,309	14,601	439,306	336,402
2000/01	336,402	364,623	50,723	751,748	11,048	439,787	300,913
2001/02	300,913	360,038	51,195	712,146	13,122	442,342	256,682
2002/03	256,682	362,424	50,329	669,435	21,168	442,627	205,640
2003/04	205,640	340,622	54,103	600,365	12,604	443,026	144,735
2004/05	144,735	374,644	56,663	576,042	10,645	443,171	122,226
2005/06	122,226	385,809	51,155	559,190	8,010	444,182	106,998
2006/07(P)	106,998	388,512	50,940	546,450	6,860	447,051	92,539

표 3 남아시아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1,484	91,067	7,315	109,866	266	98,143	11,457
1961/62	11,457	92,102	5,486	109,045	291	97,358	11,396
1962/63	11,396	92,783	6,720	110,899	320	96,943	13,636
1963/64	13,636	95,712	7,869	117,217	319	102,981	13,917
1964/65	13,917	98,426	10,128	122,471	460	107,044	14,967
1965/66	14,967	88,924	11,522	115,413	385	99,542	15,486
1966/67	15,486	87,611	14,592	117,689	448	103,439	13,802
1967/68	13,802	102,224	11,847	127,873	374	111,820	15,679
1968/69	15,679	111,037	6,856	133,572	455	116,351	16,766
1969/70	16,766	116,076	6,136	138,978	397	120,744	17,837
1970/71	17,837	122,332	5,828	145,997	473	127,937	17,587
1971/72	17,587	118,894	5,942	142,423	454	123,841	18,128
1972/73	18,128	116,934	6,493	141,555	1,817	126,506	13,232
1973/74	13,232	129,376	8,016	150,624	893	137,158	12,573
1974/75	12,573	117,789	9,829	140,191	557	131,682	7,952
1975/76	7,952	136,156	11,664	155,772	987	135,348	19,437
1976/77	19,437	133,664	7,712	160,813	1,079	137,307	22,427
1977/78	22,427	147,053	4,657	174,137	1,573	148,584	23,980
1978/79	23,980	151,088	5,340	180,408	2,191	154,707	23,510
1979/80	23,510	141,515	4,689	169,714	2,036	150,239	17,439
1980/81	17,439	153,221	2,593	173,253	2,196	156,050	15,007
1981/82	15,007	161,013	4,681	180,701	1,667	163,426	15,608
1982/83	15,608	153,057	6,145	174,810	1,527	157,037	16,246
1983/84	16,246	189,315	7,906	213,467	1,642	187,406	24,419
1984/85	24,419	186,016	5,588	216,023	1,174	186,674	28,175
1985/86	28,175	185,490	4,557	218,222	1,983	186,791	29,448
1986/87	29,448	190,173	3,663	223,284	2,173	189,858	31,253
1987/88	31,253	176,820	5,260	213,333	1,709	196,070	15,554
1988/89	15,554	204,805	9,339	229,698	1,286	207,911	20,501
1989/90	20,501	224,075	5,343	249,919	1,295	223,188	25,436
1990/91	25,436	218,524	4,245	248,205	2,207	219,043	26,955
1991/92	26,955	203,426	4,736	235,117	2,715	210,178	22,224
1992/93	22,224	213,649	7,783	243,656	1,713	219,943	22,000
1993/94	22,000	218,702	4,491	245,193	2,137	214,422	28,634
1994/95	28,634	219,418	6,221	254,273	5,963	219,921	28,389
1995/96	28,389	223,903	5,525	257,817	6,929	226,500	24,388
1996/97	24,388	231,481	6,871	262,740	5,987	238,730	18,023
1997/98	18,023	236,557	9,229	263,809	6,138	236,964	20,707
1998/99	20,707	242,288	11,258	274,253	5,189	240,430	28,634
1999/00	28,634	251,796	7,353	287,783	3,721	246,353	37,709
2000/01	37,709	257,310	4,201	299,220	6,033	238,737	54,450
2001/02	54,450	258,289	4,204	316,943	11,542	251,946	53,455
2002/03	53,455	232,323	4,680	290,458	13,530	246,859	30,069
2003/04	30,069	257,650	4,214	291,933	12,120	257,893	21,920
2004/05	21,920	257,284	5,952	285,156	9,812	258,126	17,218
2005/06	17,218	263,560	5,305	286,083	7,500	261,910	16,673
2006/07(P)	16,673	261,783	9,395	287,851	7,175	262,978	17,698

표 4 동남아시아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670	36,230	3,016	40,916	4,448	34,836	1,632
1961/62	1,632	35,755	3,304	40,691	4,132	34,760	1,799
1962/63	1,799	39,192	3,100	44,091	4,977	37,383	1,731
1963/64	1,731	38,168	3,725	43,624	5,137	36,590	1,897
1964/65	1,897	40,727	2,582	45,206	4,838	38,268	2,100
1965/66	2,100	39,498	2,993	44,591	4,368	38,117	2,106
1966/67	2,106	40,343	3,448	45,897	3,957	39,742	2,198
1967/68	2,198	38,946	3,914	45,058	3,394	38,745	2,919
1968/69	2,919	42,187	4,536	49,642	3,381	42,939	3,322
1969/70	3,322	45,075	5,923	54,320	3,885	46,366	4,069
1970/71	4,069	48,406	4,680	57,155	4,763	48,525	3,867
1971/72	3,867	48,627	5,924	58,418	5,392	49,181	3,845
1972/73	3,845	44,549	6,776	55,170	2,600	49,634	2,936
1973/74	2,936	51,970	6,080	60,986	3,976	52,999	4,011
1974/75	4,011	51,367	5,656	61,034	3,755	52,602	4,677
1975/76	4,677	54,075	5,783	64,535	5,324	54,678	4,533
1976/77	4,533	55,558	6,944	67,035	6,067	56,371	4,597
1977/78	4,597	54,136	7,944	66,677	3,716	58,279	4,682
1978/79	4,682	60,297	7,437	72,416	6,012	60,097	6,307
1979/80	6,307	60,843	8,655	75,805	6,672	62,764	6,369
1980/81	6,369	67,734	6,534	80,637	6,943	65,878	7,816
1981/82	7,815	71,676	7,073	86,564	8,976	69,480	8,108
1982/83	8,108	71,316	7,466	86,890	7,516	71,597	7,777
1983/84	7,777	79,404	8,321	95,502	10,910	76,195	8,397
1984/85	8,397	81,378	6,970	96,745	9,343	78,422	8,980
1985/86	8,980	83,476	6,655	99,111	9,899	78,721	10,491
1986/87	10,491	80,636	6,305	97,432	8,740	80,073	8,619
1987/88	8,619	80,888	7,082	96,589	6,810	83,419	6,360
1988/89	6,360	88,906	7,209	102,475	10,292	85,430	6,753
1989/90	6,753	89,422	8,190	104,365	7,606	87,798	8,961
1990/91	8,961	87,097	8,747	104,805	7,138	88,966	8,701
1991/92	8,701	91,374	10,367	110,442	8,311	93,367	8,764
1992/93	8,764	91,892	10,388	111,044	7,887	95,652	7,505
1993/94	7,505	92,729	13,335	113,569	8,478	99,213	5,878
1994/95	5,878	98,900	17,302	122,080	9,800	103,171	9,109
1995/96	9,109	102,812	15,382	127,303	9,343	106,389	11,571
1996/97	11,571	100,690	15,692	127,953	9,071	108,248	10,634
1997/98	10,634	100,910	19,960	131,504	11,370	107,445	12,689
1998/99	12,689	106,363	18,568	137,620	11,917	110,624	15,079
1999/00	15,079	110,157	17,867	143,103	10,518	115,424	17,161
2000/01	17,161	112,778	18,739	148,678	12,790	118,210	17,678
2001/02	17,678	114,032	20,077	151,787	12,525	120,180	19,082
2002/03	19,082	114,999	20,642	154,723	12,804	122,049	19,870
2003/04	19,870	120,716	18,536	159,122	16,402	122,749	19,971
2004/05	19,971	121,206	18,674	159,851	14,304	125,876	19,671
2005/06	19,671	123,562	19,260	162,493	14,100	128,046	20,347
2006/07(P)	20,347	126,154	19,065	165,566	14,690	130,016	20,860

표 5 중동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499	19,194	3,365	24,058	86	22,029	1,943
1961/62	1,943	20,575	3,715	26,233	502	23,780	1,951
1962/63	1,951	22,672	3,044	27,667	771	24,628	2,268
1963/64	2,268	24,392	2,647	29,307	619	25,755	2,933
1964/65	2,933	21,985	2,817	27,735	568	24,506	2,661
1965/66	2,661	23,241	2,299	28,201	405	25,561	2,235
1966/67	2,235	24,728	3,382	30,345	175	27,589	2,581
1967/68	2,581	26,768	2,816	32,165	227	28,463	3,475
1968/69	3,475	26,333	2,972	32,780	510	28,791	3,479
1969/70	3,479	26,288	3,732	33,499	476	30,120	2,903
1970/71	2,903	24,023	5,506	32,432	54	29,916	2,462
1971/72	2,462	27,349	6,449	36,260	66	31,403	4,791
1972/73	4,791	30,966	4,228	39,985	1,346	33,789	4,850
1973/74	4,850	24,094	6,221	35,165	46	32,186	2,933
1974/75	2,933	27,224	8,374	38,531	24	34,100	4,407
1975/76	4,407	32,890	7,424	44,721	138	37,897	6,686
1976/77	6,686	35,296	8,285	50,267	481	39,472	10,314
1977/78	10,314	33,039	10,316	53,669	1,340	41,859	10,470
1978/79	10,470	34,249	10,364	55,083	2,139	43,921	9,023
1979/80	9,023	33,771	14,315	57,109	648	46,104	10,357
1980/81	10,301	36,497	14,453	61,251	1,155	49,158	10,938
1981/82	10,938	38,048	16,282	65,268	936	53,080	11,252
1982/83	11,252	38,400	16,629	66,281	1,817	54,109	10,355
1983/84	10,355	37,873	23,241	71,469	1,511	59,375	10,583
1984/85	10,583	38,185	24,688	73,456	1,421	60,920	11,115
1985/86	11,115	42,460	22,263	75,838	708	63,585	11,545
1986/87	11,545	46,606	25,654	83,805	2,340	65,076	16,389
1987/88	16,389	45,223	24,092	85,704	4,366	67,262	14,076
1988/89	14,076	53,396	22,962	90,434	5,645	68,359	16,430
1989/90	16,430	39,921	30,534	86,885	2,297	68,152	16,436
1990/91	16,436	51,773	21,697	89,906	2,988	67,241	19,677
1991/92	19,157	51,283	24,523	94,963	9,965	69,140	15,858
1992/93	15,858	53,125	22,137	91,120	5,200	70,010	15,910
1993/94	15,910	57,360	22,644	95,914	3,963	71,994	19,957
1994/95	19,957	53,675	24,351	97,983	5,298	74,359	18,326
1995/96	18,326	54,709	24,663	97,698	2,436	75,405	19,857
1996/97	19,857	53,905	33,728	107,490	2,528	80,454	24,508
1997/98	24,508	50,969	29,717	105,194	3,145	80,313	21,736
1998/99	21,736	57,490	29,532	108,758	4,491	82,173	22,094
1999/00	22,094	46,904	37,270	106,268	2,999	83,042	20,227
2000/01	20,227	47,128	34,203	101,558	2,403	80,818	18,337
2001/02	18,337	50,109	34,387	102,833	2,558	81,752	18,523
2002/03	18,523	57,650	32,552	108,725	3,453	84,331	20,941
2003/04	20,941	59,686	30,512	111,139	3,448	87,977	19,714
2004/05	19,714	62,570	32,002	114,286	3,317	89,703	21,266
2005/06	21,266	63,943	33,830	119,039	4,585	92,232	22,222
2006/07(P)	22,222	64,023	32,710	118,955	4,050	94,172	20,733

표 6 북아메리카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27,385	214,388	1,283	343,056	40,596	162,323	140,137
1961/62	140,137	185,980	1,485	327,602	46,474	161,717	119,411
1962/63	119,411	198,325	1,736	319,472	43,961	162,696	112,815
1963/64	112,815	217,134	1,189	331,138	58,918	161,379	110,841
1964/65	110,841	198,586	1,093	310,520	54,212	159,864	96,444
1965/66	96,444	225,130	1,139	322,713	69,012	178,039	75,662
1966/67	75,662	233,905	977	310,544	59,273	179,773	71,498
1967/68	71,498	249,134	1,214	321,846	54,799	180,492	86,555
1968/69	86,555	248,413	1,241	336,209	42,868	190,291	103,050
1969/70	103,050	250,961	2,008	356,019	48,846	198,741	108,432
1970/71	108,432	228,144	949	337,525	56,895	199,047	81,583
1971/72	81,583	289,042	1,260	371,885	61,886	213,748	96,251
1972/73	96,251	274,517	3,592	374,360	90,399	219,510	64,451
1973/74	64,451	287,570	4,195	356,216	89,533	217,834	48,849
1974/75	48,849	247,466	5,462	301,777	79,579	173,410	48,788
1975/76	48,788	301,094	2,960	352,842	99,790	194,547	58,505
1976/77	58,505	318,369	3,386	380,260	95,721	194,523	90,016
1977/78	90,016	322,360	3,663	416,039	108,147	203,032	104,860
1978/79	104,860	332,758	4,240	441,858	111,121	222,797	107,940
1979/80	107,940	351,132	8,774	467,846	131,339	230,351	106,156
1980/81	106,156	326,927	10,277	443,360	135,469	217,226	90,665
1981/82	92,122	403,802	4,220	500,144	138,710	229,327	132,107
1982/83	132,107	402,832	8,701	543,640	126,557	243,363	173,720
1983/84	173,895	276,074	7,768	457,737	128,656	232,794	96,287
1984/85	95,193	377,129	7,066	479,388	118,548	247,131	113,709
1985/86	113,709	415,693	4,694	534,096	85,720	251,247	197,129
1986/87	197,135	392,898	7,094	597,127	104,577	268,757	223,793
1987/88	223,793	351,874	6,712	582,379	127,515	270,221	184,643
1988/89	186,184	262,029	10,139	458,352	121,616	238,568	98,168
1989/90	98,168	354,934	11,849	464,951	132,210	256,761	75,980
1990/91	75,980	396,900	9,428	482,308	114,479	275,002	92,827
1991/92	92,553	360,702	11,552	464,807	119,487	277,703	67,617
1992/93	67,617	429,767	11,334	508,718	116,594	290,812	101,312
1993/94	101,179	338,234	15,142	454,555	103,829	286,415	64,311
1994/95	64,311	429,073	15,059	508,443	127,455	307,266	73,722
1995/96	73,722	356,353	16,526	446,601	124,381	281,241	40,979
1996/97	39,179	421,161	14,771	475,111	106,648	310,408	58,055
1997/98	58,055	410,678	18,181	486,914	100,792	312,994	73,128
1998/99	73,128	425,478	19,480	518,086	105,541	317,984	94,561
1999/00	94,561	415,270	20,264	530,095	111,875	324,681	93,539
2000/01	93,539	418,174	23,384	535,097	109,825	329,347	95,925
2001/02	95,925	395,214	23,351	514,490	103,797	327,733	82,960
2002/03	82,960	359,833	22,456	465,249	84,422	322,021	58,806
2003/04	58,806	428,387	20,253	507,446	108,467	337,811	61,168
2004/05	61,168	469,486	20,760	551,414	102,066	354,417	94,931
2005/06	94,931	444,921	22,172	562,024	108,629	357,713	95,682
2006/07(P)	95,682	423,846	24,432	543,960	109,252	371,856	62,852

표 7 카리브지역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22	885	757	1,664	20	1,622	22
1961/62	22	701	1,151	1,874	24	1,828	22
1962/63	22	888	1,208	2,118	9	2,087	22
1963/64	22	825	1,751	2,598	0	2,576	22
1964/65	22	817	1,802	2,641	0	2,619	22
1965/66	22	764	1,856	2,642	6	2,614	22
1966/67	22	766	1,656	2,444	2	2,420	22
1967/68	22	742	1,724	2,488	0	2,461	27
1968/69	27	676	1,694	2,397	1	2,308	88
1969/70	88	1,026	1,929	3,043	0	2,941	102
1970/71	102	1,156	1,867	3,125	2	3,022	101
1971/72	101	977	1,978	3,056	5	2,928	123
1972/73	123	1,010	1,831	2,964	0	2,861	103
1973/74	103	908	2,213	3,224	0	3,095	129
1974/75	129	923	2,294	3,346	2	3,213	131
1975/76	131	978	2,420	3,529	6	3,368	155
1976/77	155	915	2,360	3,430	11	3,253	166
1977/78	166	1,168	2,604	3,938	0	3,699	239
1978/79	239	1,164	2,324	3,727	0	3,524	203
1979/80	203	1,158	2,786	4,147	0	4,012	135
1980/81	135	1,308	2,840	4,283	0	4,145	138
1981/82	123	1,063	3,238	4,424	0	4,276	148
1982/83	148	1,101	3,197	4,446	0	4,294	152
1983/84	152	1,348	3,543	5,043	1	4,888	154
1984/85	154	1,424	3,235	4,813	0	4,619	194
1985/86	194	1,203	3,380	4,777	0	4,646	131
1986/87	131	1,306	3,703	5,140	1	4,918	221
1987/88	221	1,240	3,858	5,319	1	5,079	239
1988/89	239	1,224	3,941	5,404	0	5,176	228
1989/90	228	1,132	3,820	5,180	0	4,963	217
1990/91	217	1,065	3,554	4,836	0	4,628	208
1991/92	208	1,027	3,298	4,533	0	4,329	204
1992/93	204	1,048	3,481	4,733	0	4,518	215
1993/94	215	883	3,356	4,454	0	4,261	193
1994/95	193	992	3,746	4,931	0	4,736	195
1995/96	195	978	3,470	4,643	0	4,481	162
1996/97	162	1,167	3,617	4,946	0	4,781	165
1997/98	165	1,223	3,522	4,910	0	4,714	196
1998/99	196	1,120	3,874	5,190	0	4,989	201
1999/00	201	1,216	4,335	5,752	0	5,531	221
2000/01	221	1,260	4,125	5,606	0	5,381	225
2001/02	225	1,323	4,799	6,347	0	6,093	254
2002/03	254	1,405	4,095	5,754	0	5,440	314
2003/04	314	1,373	4,469	6,156	20	5,828	308
2004/05	308	1,171	5,200	6,679	0	6,254	425
2005/06	425	1,192	5,141	6,758	20	6,378	360
2006/07(P)	360	1,186	5,330	6,876	0	6,493	383

표 8 중앙아메리카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241	1,667	278	2,186	42	1,954	190
1961/62	190	1,609	339	2,138	26	1,928	184
1962/63	184	1,785	335	2,304	39	2,045	220
1963/64	220	1,813	350	2,383	47	2,102	234
1964/65	234	1,887	379	2,500	86	2,165	249
1965/66	249	1,948	448	2,645	80	2,284	281
1966/67	281	2,008	379	2,668	52	2,269	347
1967/68	347	2,065	409	2,821	85	2,415	321
1968/69	321	2,282	403	3,006	77	2,674	255
1969/70	255	2,291	399	2,945	49	2,712	184
1970/71	184	2,263	523	2,970	82	2,675	213
1971/72	213	2,434	435	3,082	66	2,776	240
1972/73	240	2,025	551	2,816	26	2,676	114
1973/74	114	2,423	580	3,117	24	2,924	169
1974/75	169	2,379	528	3,076	27	2,900	149
1975/76	149	2,873	503	3,525	33	3,120	372
1976/77	372	2,478	590	3,440	47	3,185	208
1977/78	208	2,578	888	3,674	47	3,277	350
1978/79	350	2,998	756	4,104	63	3,668	373
1979/80	373	2,984	820	4,177	83	3,615	479
1980/81	479	2,949	914	4,342	48	3,782	512
1981/82	518	3,251	719	4,488	63	3,978	447
1982/83	447	3,069	803	4,319	30	3,903	386
1983/84	386	3,428	868	4,682	46	4,149	487
1984/85	487	3,637	791	4,915	58	4,321	536
1985/86	536	3,782	826	5,144	54	4,551	539
1986/87	539	3,589	995	5,123	49	4,650	424
1987/88	424	3,538	1,060	5,022	2	4,656	364
1988/89	364	3,834	1,175	5,373	0	4,990	383
1989/90	383	3,737	1,330	5,450	1	4,979	470
1990/91	470	3,791	1,469	5,730	3	5,169	558
1991/92	558	3,464	1,695	5,717	17	5,178	522
1992/93	522	3,872	1,635	6,029	10	5,506	513
1993/94	513	3,816	2,142	6,471	31	5,928	512
1994/95	512	3,504	2,252	6,268	101	5,745	422
1995/96	422	4,034	2,096	6,552	50	5,976	526
1996/97	526	3,953	2,835	7,314	132	6,506	676
1997/98	676	3,709	2,688	7,073	44	6,470	559
1998/99	559	3,517	3,031	7,107	30	6,582	495
1999/00	495	3,494	3,596	7,585	20	7,008	557
2000/01	557	3,639	3,842	8,038	43	7,256	739
2001/02	739	3,371	3,714	7,824	99	6,912	813
2002/03	813	3,635	3,800	8,248	167	7,106	975
2003/04	975	3,760	4,117	8,852	130	7,400	1,322
2004/05	1,322	3,349	4,428	9,099	126	7,868	1,105
2005/06	1,105	3,397	4,392	8,894	106	7,832	956
2006/07(P)	956	3,658	4,415	9,029	100	8,014	915

표 9 남아메리카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4,572	30,344	3,227	38,143	3,924	29,892	4,327
1961/62	4,546	34,295	3,990	42,831	7,115	32,110	3,606
1962/63	3,606	33,285	3,857	40,748	6,110	30,672	3,966
1963/64	3,966	38,194	4,462	46,622	9,053	31,768	5,801
1964/65	5,801	44,410	3,973	54,184	11,143	34,541	8,500
1965/66	8,500	39,342	4,628	52,470	12,194	35,736	4,540
1966/67	4,540	42,230	5,334	52,104	8,024	37,743	6,337
1967/68	6,337	42,551	5,648	54,536	8,388	38,588	7,560
1968/69	7,560	42,183	5,836	55,579	9,190	40,536	5,853
1969/70	5,853	49,402	4,969	60,224	12,496	41,706	6,022
1970/71	6,022	48,392	4,853	59,267	11,599	42,645	5,023
1971/72	5,023	44,562	5,381	54,966	5,449	46,368	3,149
1972/73	3,149	49,820	7,931	60,900	11,106	46,692	3,102
1973/74	3,102	55,237	7,659	65,998	12,562	49,839	3,597
1974/75	3,597	52,329	6,304	62,230	9,209	48,683	4,338
1975/76	4,338	56,083	8,218	68,639	12,421	51,208	5,010
1976/77	5,010	65,038	8,253	78,301	18,103	54,032	6,166
1977/78	6,168	54,665	10,694	71,527	13,651	53,142	4,734
1978/79	4,734	59,162	11,540	75,436	14,619	56,893	3,924
1979/80	3,924	59,327	13,024	76,275	10,428	59,941	5,906
1980/81	5,906	70,504	10,565	86,975	19,106	61,734	6,135
1981/82	6,162	69,133	11,874	87,169	16,825	62,800	7,544
1982/83	7,544	70,297	12,047	89,888	22,563	62,653	4,672
1983/84	4,697	72,678	11,818	89,193	19,050	65,486	4,657
1984/85	4,656	76,997	13,332	94,985	21,013	68,128	5,844
1985/86	6,124	73,279	11,010	90,413	14,874	68,709	6,830
1986/87	6,830	78,212	9,590	94,632	10,499	76,069	8,064
1987/88	8,064	78,753	8,777	95,594	10,853	74,152	10,589
1988/89	10,589	73,882	7,051	91,522	7,144	72,566	11,812
1989/90	11,812	69,508	8,354	89,674	11,054	72,643	5,977
1990/91	5,982	73,497	11,825	91,304	11,931	73,445	5,928
1991/92	5,841	79,633	13,076	98,550	14,360	75,512	8,678
1992/93	8,653	77,151	16,022	101,826	13,061	79,384	9,381
1993/94	9,376	79,549	17,653	106,578	10,867	84,005	11,706
1994/95	11,706	87,651	19,057	118,414	15,216	87,559	15,639
1995/96	15,639	78,474	17,297	111,410	14,991	86,968	9,451
1996/97	9,451	96,804	17,151	123,406	24,889	88,774	9,743
1997/98	9,743	94,198	21,256	125,197	27,589	89,241	8,367
1998/99	8,367	89,574	21,591	119,532	19,607	90,666	9,259
1999/00	9,259	96,678	22,568	128,505	26,928	91,791	9,786
2000/01	9,786	104,597	20,160	134,543	30,772	94,198	9,573
2001/02	9,541	97,999	19,444	126,984	25,237	93,110	8,637
2002/03	8,637	106,252	19,720	134,609	25,612	94,917	14,080
2003/04	14,080	111,252	18,133	143,465	29,307	97,494	16,664
2004/05	16,664	113,099	18,481	148,244	30,729	103,234	14,281
2005/06	14,281	105,303	19,742	139,326	21,472	105,412	12,442
2006/07(P)	12,442	112,374	20,365	145,181	26,330	108,755	10,096

표 10 유럽연합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8,521	122,912	36,188	177,621	6,500	152,039	19,082
1961/62	19,082	118,428	40,151	177,661	8,188	151,906	17,567
1962/63	17,567	130,696	38,775	187,038	8,049	158,085	20,904
1963/64	20,904	132,181	41,816	194,901	9,911	165,366	19,624
1964/65	19,624	133,818	39,605	193,047	12,269	162,922	17,856
1965/66	17,856	139,436	46,560	203,852	13,476	169,080	21,296
1966/67	21,296	136,127	44,263	201,686	13,362	168,949	19,375
1967/68	19,375	154,710	42,329	216,414	15,249	179,928	21,237
1968/69	21,237	159,955	42,535	223,727	19,203	182,178	22,346
1969/70	22,346	161,486	42,500	226,332	21,543	186,439	18,350
1970/71	18,350	152,163	50,641	221,154	16,627	187,808	16,719
1971/72	16,719	178,413	48,008	243,140	22,803	201,725	18,612
1972/73	18,612	180,804	36,561	235,977	15,772	203,543	16,662
1973/74	16,662	186,023	35,734	238,419	10,350	207,943	20,126
1974/75	20,126	196,602	32,896	249,624	11,484	211,906	26,234
1975/76	26,234	179,597	37,933	243,764	14,258	208,608	20,898
1976/77	20,898	172,921	48,118	241,937	8,046	212,207	21,684
1977/78	21,684	185,276	39,746	246,706	10,174	217,151	19,381
1978/79	19,381	207,456	39,506	266,343	14,140	226,385	25,818
1979/80	25,818	193,675	41,767	261,260	15,823	223,311	22,126
1980/81	23,158	211,506	38,402	273,066	23,376	224,712	24,978
1981/82	25,547	202,117	36,738	264,402	23,085	219,058	22,259
1982/83	22,660	220,301	28,203	271,164	23,610	219,945	27,609
1983/84	27,607	214,514	24,335	266,456	23,034	222,904	20,518
1984/85	20,518	259,710	19,412	299,640	33,411	230,219	36,010
1985/86	35,156	241,357	14,669	291,182	28,954	222,699	39,529
1986/87	39,527	234,503	13,199	287,229	30,150	218,029	39,050
1987/88	39,765	239,982	18,632	298,379	27,864	232,821	37,694
1988/89	37,694	247,013	17,038	301,745	38,051	228,879	34,815
1989/90	34,846	251,593	14,993	301,432	36,829	228,625	35,978
1990/91	37,022	254,160	14,823	306,005	38,964	222,992	44,049
1991/92	43,977	264,688	8,219	316,884	44,186	215,002	57,696
1992/93	57,295	231,198	11,891	300,384	41,133	206,612	52,639
1993/94	52,639	228,622	11,115	292,376	35,312	213,042	44,022
1994/95	41,729	220,162	12,252	274,143	29,742	213,324	31,077
1995/96	31,077	226,268	13,641	270,986	21,770	222,106	27,110
1996/97	27,110	254,461	12,762	294,333	29,584	233,217	31,532
1997/98	31,532	259,651	10,061	301,244	22,587	235,883	42,774
1998/99	42,774	264,461	10,981	318,216	29,632	241,650	46,934
1999/00	46,434	250,042	11,035	307,511	34,904	235,648	36,959
2000/01	36,959	258,493	11,357	306,809	27,761	244,580	34,468
2001/02	34,468	255,446	17,785	307,699	22,567	246,906	38,226
2002/03	38,226	265,220	21,472	324,918	28,818	256,783	39,317
2003/04	39,317	231,604	14,943	285,864	15,547	245,876	24,441
2004/05	24,441	289,387	12,058	325,886	18,549	256,546	50,791
2005/06	50,791	256,088	11,970	318,849	19,130	254,395	45,324
2006/07(P)	45,324	264,088	10,220	319,632	21,680	255,250	42,702

표 11 구소련연방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7,000	112,130	758	119,888	6,982	104,906	8,000
1961/62	8,000	116,769	601	125,370	8,422	111,948	5,000
1962/63	5,000	122,202	441	127,643	8,293	112,350	7,000
1963/64	7,000	91,544	10,236	108,780	4,696	95,084	9,000
1964/65	9,000	129,463	2,462	140,925	3,755	111,170	26,000
1965/66	26,000	104,657	8,847	139,504	4,884	121,620	13,000
1966/67	13,000	150,313	3,665	166,978	5,236	122,742	39,000
1967/68	39,000	128,996	2,129	170,125	6,292	126,833	37,000
1968/69	37,000	147,770	1,072	185,842	6,934	138,908	40,000
1969/70	40,000	140,660	1,604	182,264	7,616	154,648	20,000
1970/71	20,000	163,705	1,087	184,792	8,357	164,435	12,000
1971/72	12,000	159,168	8,103	179,271	6,877	157,394	15,000
1972/73	15,000	146,935	22,694	184,629	1,787	165,842	17,000
1973/74	17,000	195,647	11,183	223,830	6,115	186,715	31,000
1974/75	31,000	170,799	5,509	207,308	5,070	181,238	21,000
1975/76	21,000	123,202	25,974	170,176	627	161,549	8,000
1976/77	8,000	196,296	10,760	215,056	3,094	192,962	19,000
1977/78	19,000	172,040	18,776	209,816	2,120	203,696	4,000
1978/79	4,000	210,428	15,694	230,122	2,794	204,328	23,000
1979/80	23,000	159,336	31,219	213,555	713	201,842	11,000
1980/81	11,000	166,792	35,283	213,075	626	201,449	11,000
1981/82	11,000	140,798	47,159	198,957	600	194,357	4,000
1982/83	4,000	164,811	33,623	202,434	600	190,234	11,600
1983/84	11,600	174,157	32,309	218,066	650	199,616	17,800
1984/85	17,800	155,984	55,137	228,921	644	201,877	26,400
1985/86	26,400	173,133	29,811	229,344	633	200,311	28,400
1986/87	28,400	190,751	27,536	246,687	758	210,529	35,400
1987/88	32,410	186,043	44,673	263,126	15,709	211,557	35,860
1988/89	35,860	166,173	49,087	251,120	13,390	203,679	34,051
1989/90	34,051	180,209	45,550	259,810	11,040	214,161	34,609
1990/91	34,609	201,070	38,472	274,151	12,375	220,532	41,244
1991/92	41,244	148,415	38,949	228,608	3,640	192,300	32,668
1992/93	32,668	182,325	33,667	248,660	9,705	198,366	40,589
1993/94	40,589	175,284	16,701	232,574	7,979	180,767	43,828
1994/95	43,828	139,883	8,983	192,694	8,284	153,266	31,144
1995/96	31,144	117,106	11,039	159,289	8,928	133,935	16,426
1996/97	16,426	115,826	7,907	140,159	5,867	122,581	11,711
1997/98	11,711	149,693	7,393	168,797	9,293	129,959	29,545
1998/99	29,545	93,932	7,469	130,946	11,093	109,275	10,578
1999/00	10,578	105,970	12,735	129,283	11,266	108,329	9,688
2000/01	9,688	112,943	6,722	129,353	7,460	110,513	11,380
2001/02	11,380	153,676	5,415	170,471	20,503	122,152	27,816
2002/03	27,816	158,363	5,811	191,990	33,873	129,362	28,755
2003/04	28,755	117,127	9,244	155,126	13,952	124,033	17,141
2004/05	17,141	150,549	6,161	173,851	23,306	128,900	21,645
2005/06	21,645	148,129	5,476	175,250	26,945	126,594	21,711
2006/07(P)	21,711	132,644	5,571	159,926	19,850	123,130	16,946

표 12 기타유럽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2,176	26,971	2,270	31,417	1,510	28,166	1,741
1961/62	1,741	25,392	2,977	30,110	1,809	26,360	1,941
1962/63	1,941	25,363	3,523	30,827	1,626	27,059	2,142
1963/64	2,142	26,863	3,365	32,370	1,955	28,831	1,584
1964/65	1,584	29,571	3,819	34,974	1,634	31,585	1,755
1965/66	1,755	29,905	3,879	35,539	1,682	32,266	1,591
1966/67	1,591	36,016	2,471	40,078	3,010	35,121	1,947
1967/68	1,947	34,931	2,890	39,768	3,552	33,728	2,488
1968/69	2,488	32,062	2,451	37,001	3,014	31,579	2,408
1969/70	2,408	34,298	2,565	39,271	2,111	34,144	3,016
1970/71	3,016	30,937	4,804	38,757	1,029	35,315	2,413
1971/72	2,413	37,720	3,274	43,407	1,228	39,274	2,905
1972/73	2,905	40,709	3,414	47,028	1,393	42,653	2,982
1973/74	2,982	37,517	4,457	44,956	1,871	40,622	2,463
1974/75	2,463	38,127	4,358	44,948	1,068	40,613	3,267
1975/76	3,267	39,960	4,142	47,369	1,929	41,632	3,808
1976/77	3,808	46,676	4,412	54,896	2,569	47,823	4,504
1977/78	4,504	45,114	4,144	53,762	2,537	46,092	5,133
1978/79	5,133	42,820	5,902	53,855	2,220	47,660	3,975
1979/80	3,975	45,782	5,535	55,292	2,062	48,429	4,801
1980/81	5,201	46,317	6,249	57,767	2,614	50,273	4,880
1981/82	4,880	46,397	5,572	56,849	2,606	48,528	5,715
1982/83	5,715	52,670	2,465	60,850	4,064	50,708	6,078
1983/84	6,078	48,236	2,835	57,149	2,713	49,473	4,963
1984/85	4,963	54,966	2,817	62,746	2,876	53,363	6,507
1985/86	6,507	43,252	4,088	53,847	1,687	47,621	4,539
1986/87	4,539	51,520	3,294	59,353	2,510	49,332	7,511
1987/88	7,511	44,584	3,202	55,297	632	49,237	5,428
1988/89	5,428	48,236	2,934	56,598	1,958	49,105	5,535
1989/90	5,535	47,610	3,081	56,226	2,032	48,008	6,186
1990/91	6,186	43,012	3,997	53,195	537	48,048	4,610
1991/92	4,610	50,860	2,617	58,087	1,046	49,503	7,538
1992/93	5,125	31,716	5,384	42,225	1,782	37,378	3,065
1993/94	3,065	35,522	3,402	41,989	758	37,173	4,058
1994/95	4,058	38,679	2,225	44,962	1,532	38,910	4,520
1995/96	4,520	42,380	1,983	48,883	3,779	39,535	5,569
1996/97	5,569	32,302	3,197	41,068	1,583	36,250	3,235
1997/98	3,235	45,424	2,395	51,054	2,316	41,627	7,111
1998/99	7,111	37,351	1,995	46,457	2,082	38,374	6,001
1999/00	6,001	38,398	2,690	47,089	2,520	39,249	5,320
2000/01	5,320	27,348	3,429	36,097	1,318	30,533	4,246
2001/02	4,246	35,767	3,220	43,233	2,858	34,177	6,198
2002/03	6,198	34,797	3,397	44,392	3,390	34,438	6,564
2003/04	6,564	26,285	5,946	38,795	509	34,391	3,895
2004/05	3,895	44,604	2,528	51,027	3,629	39,461	7,937
2005/06	7,937	40,015	2,514	50,466	3,590	39,019	7,857
2006/07(P)	7,857	35,084	2,285	45,226	2,690	37,768	4,768

표 13 북아프리카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105	10,756	2,231	13,092	593	12,197	302
1961/62	302	7,182	4,429	11,913	275	11,420	218
1962/63	218	11,608	3,018	14,844	869	13,615	360
1963/64	360	12,248	3,008	15,616	1,217	14,056	343
1964/65	343	10,646	3,351	14,340	772	13,140	428
1965/66	428	11,006	3,799	15,233	604	14,239	390
1966/67	390	9,863	5,219	15,472	669	14,467	336
1967/68	336	11,346	5,498	17,180	645	15,975	560
1968/69	560	16,134	3,514	20,208	949	18,015	1,244
1969/70	1,244	12,159	3,726	17,129	995	15,623	511
1970/71	511	12,981	5,043	18,535	676	17,576	283
1971/72	283	13,858	4,931	19,072	493	18,315	264
1972/73	264	15,022	5,107	20,393	349	19,061	983
1973/74	983	12,671	7,179	20,833	180	17,224	3,429
1974/75	3,429	14,516	8,057	26,002	113	22,161	3,728
1975/76	3,728	15,554	8,287	27,569	220	22,177	5,172
1976/77	5,172	17,175	8,063	30,410	223	24,320	5,867
1977/78	5,867	11,713	10,394	27,974	150	23,551	4,273
1978/79	4,273	14,946	11,341	30,560	95	25,944	4,521
1979/80	4,521	14,051	11,230	29,802	178	26,387	3,237
1980/81	3,240	15,597	12,923	31,760	134	28,305	3,321
1981/82	3,321	13,158	14,564	31,043	32	27,151	3,860
1982/83	3,860	15,595	13,309	32,764	27	29,909	2,828
1983/84	2,828	14,021	15,731	32,580	71	30,343	2,166
1984/85	2,166	15,962	16,791	34,919	17	33,465	1,437
1985/86	1,446	18,135	16,683	36,264	99	34,496	1,669
1986/87	1,669	19,772	18,097	39,538	121	36,732	2,685
1987/88	2,685	17,612	19,648	39,945	230	37,141	2,574
1988/89	2,574	19,334	19,069	40,977	229	38,060	2,688
1989/90	2,688	20,602	18,963	42,253	85	39,500	2,668
1990/91	2,668	21,977	19,172	43,817	159	40,930	2,728
1991/92	2,728	27,150	16,372	46,250	240	41,019	4,991
1992/93	4,991	20,995	19,706	45,692	230	41,129	4,333
1993/94	4,333	19,312	21,493	45,138	371	41,782	2,985
1994/95	2,985	24,895	22,212	50,092	353	43,717	6,022
1995/96	6,022	20,111	18,072	44,205	446	41,262	2,497
1996/97	2,497	33,497	21,668	57,662	378	49,762	7,522
1997/98	7,522	22,684	24,600	54,806	613	48,151	6,042
1998/99	6,042	26,944	25,598	58,584	551	49,707	8,326
1999/00	8,326	24,721	25,822	58,869	670	50,538	7,661
2000/01	7,661	21,522	28,734	57,917	1,005	50,122	6,790
2001/02	6,790	25,652	28,224	60,666	765	52,233	7,668
2002/03	7,668	25,062	28,355	61,085	980	52,257	7,848
2003/04	7,848	31,983	23,963	63,794	1,001	52,319	10,474
2004/05	10,474	33,338	29,813	73,625	1,314	58,076	14,235
2005/06	14,235	27,772	29,290	71,297	1,210	57,916	12,171
2006/07(P)	12,171	35,348	26,455	73,974	1,010	60,156	12,808

표 14 서브사하라아프리카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868	31,188	1,257	33,313	2,327	29,690	1,296
1961/62	1,296	34,452	1,662	37,410	3,217	33,011	1,182
1962/63	1,182	35,822	1,806	38,810	3,256	34,509	1,045
1963/64	1,045	34,644	1,820	37,509	1,535	35,083	891
1964/65	891	36,018	2,292	39,201	1,044	37,227	930
1965/66	930	36,003	2,683	39,616	1,317	36,915	1,384
1966/67	1,384	40,188	3,229	44,801	4,109	36,615	4,077
1967/68	4,077	38,351	2,176	44,604	3,959	38,977	1,668
1968/69	1,668	37,694	2,445	41,807	2,469	37,756	1,582
1969/70	1,582	41,038	2,467	45,087	1,970	41,629	1,488
1970/71	1,488	43,962	3,364	48,814	4,008	41,996	2,810
1971/72	2,810	45,816	3,207	51,833	4,901	42,604	4,328
1972/73	4,330	35,765	3,145	43,240	1,434	39,367	2,439
1973/74	2,439	47,623	3,912	53,974	5,065	44,574	4,335
1974/75	4,335	48,681	3,333	56,349	4,411	48,467	3,471
1975/76	3,471	46,933	3,516	53,920	2,242	48,362	3,316
1976/77	3,317	49,745	4,256	57,318	3,519	48,874	4,925
1977/78	4,925	49,744	5,517	60,186	4,417	49,953	5,816
1978/79	5,816	49,517	6,682	62,015	3,467	54,286	4,262
1979/80	4,255	54,611	7,089	65,955	4,571	56,498	4,886
1980/81	4,881	57,880	8,389	71,150	5,638	57,423	8,089
1981/82	8,077	54,587	8,822	71,486	4,607	60,280	6,599
1982/83	6,597	48,418	10,594	65,609	1,246	59,947	4,416
1983/84	4,415	47,418	11,840	63,673	501	59,923	3,249
1984/85	3,249	53,030	11,547	67,826	1,238	60,859	5,729
1985/86	5,729	60,582	8,573	74,884	4,130	63,061	7,693
1986/87	7,693	60,511	8,014	76,218	2,774	65,888	7,556
1987/88	7,556	59,455	8,872	75,883	2,026	67,766	6,091
1988/89	6,091	72,068	7,166	85,325	6,086	70,443	8,796
1989/90	8,796	64,261	7,717	80,774	2,293	70,107	8,374
1990/91	8,374	62,474	9,876	80,724	1,330	74,686	4,708
1991/92	4,708	61,894	15,549	82,151	213	76,447	5,491
1992/93	5,476	69,843	10,929	86,248	1,887	77,151	7,210
1993/94	7,210	74,513	11,523	93,246	5,967	80,697	6,582
1994/95	6,582	68,317	10,751	85,650	1,141	80,920	3,589
1995/96	3,589	79,983	9,521	93,093	4,083	84,758	4,252
1996/97	4,252	82,823	11,440	98,515	2,040	89,081	7,394
1997/98	7,394	72,790	12,616	92,800	1,816	85,879	5,105
1998/99	5,105	82,112	13,230	100,447	1,049	93,186	6,212
1999/00	6,212	82,383	13,875	102,470	2,095	93,811	6,564
2000/01	6,564	78,506	16,616	101,686	1,802	95,169	4,715
2001/02	4,715	84,782	19,205	108,702	1,886	99,538	7,278
2002/03	7,278	80,825	19,048	107,151	1,630	97,361	8,160
2003/04	8,160	89,425	18,674	116,259	1,482	106,061	8,716
2004/05	8,716	90,326	23,363	122,405	3,073	110,808	8,524
2005/06	8,524	96,094	22,565	127,183	1,486	117,641	8,056
2006/07(P)	8,056	94,012	22,600	124,668	1,125	116,604	6,939

표 15 오세아니아 곡물 통계

연도	이입량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총공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960/61	2,048	11,199	161	13,408	7,854	4,373	1,181
1961/62	1,181	9,595	173	10,949	5,783	4,170	996
1962/63	996	11,490	183	12,669	6,820	4,704	1,145
1963/64	1,145	12,123	251	13,519	7,658	4,788	1,073
1964/65	1,073	13,368	240	14,681	8,043	5,448	1,190
1965/66	1,190	10,070	225	11,485	5,509	5,018	958
1966/67	958	17,277	156	18,391	9,298	5,876	3,217
1967/68	3,217	10,500	127	13,844	6,224	5,359	2,261
1968/69	2,261	19,621	102	21,984	7,463	5,490	9,031
1969/70	9,031	15,026	95	24,152	9,475	5,588	9,089
1970/71	9,089	14,374	171	23,634	12,232	5,972	5,430
1971/72	5,430	15,497	130	21,057	10,741	7,561	2,755
1972/73	2,755	11,263	95	14,113	5,807	7,137	1,169
1973/74	1,169	17,658	165	18,992	9,679	6,636	2,677
1974/75	2,677	16,738	223	19,638	11,702	5,658	2,278
1975/76	2,278	18,788	215	21,281	12,635	5,026	3,620
1976/77	3,620	18,124	111	21,855	12,596	6,015	3,244
1977/78	3,244	14,798	118	18,160	10,006	6,280	1,874
1978/79	1,874	26,506	152	28,532	15,433	6,638	6,461
1979/80	6,461	23,588	180	30,229	16,805	7,917	5,507
1980/81	5,507	17,394	192	23,093	12,484	7,592	3,017
1981/82	3,017	24,501	220	27,738	14,589	7,408	5,741
1982/83	5,741	14,061	322	20,124	9,225	7,866	3,033
1983/84	3,073	33,155	362	36,590	20,340	7,486	8,764
1984/85	8,764	29,194	342	38,300	21,097	7,615	9,588
1985/86	9,588	26,149	319	36,056	21,797	7,333	6,926
1986/87	6,926	24,982	448	32,356	19,552	8,049	4,755
1987/88	4,891	21,823	487	27,201	13,403	9,620	4,178
1988/89	4,178	22,913	503	27,594	14,414	8,989	4,191
1989/90	4,191	23,119	589	27,899	14,668	8,956	4,275
1990/91	4,275	23,867	533	28,675	15,655	9,360	3,660
1991/92	3,660	20,577	568	24,805	10,410	9,897	4,498
1992/93	4,463	25,904	624	30,991	13,097	11,221	6,673
1993/94	6,673	27,968	947	35,588	19,435	11,218	4,935
1994/95	4,935	15,997	923	21,855	8,130	10,454	3,271
1995/96	3,271	27,641	629	31,541	18,056	10,617	2,868
1996/97	2,868	34,971	740	38,579	24,251	11,047	3,281
1997/98	3,281	30,610	796	34,687	19,279	11,600	3,808
1998/99	3,808	33,393	845	38,046	22,125	11,907	4,014
1999/00	4,014	35,211	991	40,216	22,069	12,618	5,529
2000/01	5,529	34,440	983	40,952	21,293	12,274	7,385
2001/02	7,385	38,415	967	46,767	22,050	13,632	11,085
2002/03	11,085	18,064	1,185	30,334	11,517	13,554	5,263
2003/04	5,263	42,320	901	48,484	25,440	14,616	8,428
2004/05	8,428	35,285	1,023	44,736	19,460	15,142	10,134
2005/06	10,134	40,110	945	51,189	23,990	16,020	11,179
2006/07(P)	11,179	39,159	850	51,188	24,390	16,175	10,623

자료 : http://www.fas.usda.gov/psd에서

M45-69 세계농업뉴스 제69호 (2006. 5)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6년 5월
발 행 2006년 5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